

토론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 | 2017년 8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람드리홀

주최 |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10:00 사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10:10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김민경 기자 | 한겨레
- 10:30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홍순탁 회계사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10:50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이상훈 변호사 | 경제개혁연대 ·
김도희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1:15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등)**
김남근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1:40 종합토론
- 12:00 폐회

목차

발제1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 김민경	04
발제2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 홍순탁	23
발제3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 이상훈·김도희	38
발제4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 김남근	66

‘삼성 뇌물 사건’ 재판의 전개와 쟁점

김민경 / 기자, 한겨레

I. 들어가며

“지난 몇 개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고, 이게 모두 다 제 탓이었다는 점입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가 경영을 맡게 된다면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어 보자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되어 버리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합니다.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나 제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다든지 대통령에게 그런 기대를 한 적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우리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제가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나 심한 오해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최후진술을 읽어 내려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몇 차례 울먹이느라 말을 멈췄다. 뒤이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일어나 말했다. “이번 일은 오로지 제 짧은 생각과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독선, 법에 대한 무지로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상 유고상태인 회장님을 대신해 그룹 일을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만약 삼성에 책임을 물으신다면 판단력 흐려진 제게 물어주시고 다른 피고인들은 제

판단을 믿고 따랐다는 점을 참작 해주시길 마지막 기회를 빌어 말씀드린다.” 삼성의 주인은 이재용인가 최지성인가?

1심 구속 기간 만료인 8월 27일 일요일을 이틀 앞둔 8월 25일 오후 2시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나온다. 2월 28일 기소된 뒤 4월 7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8월 7일 결심 때까지 53번의 공판이 열렸다.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 전 4개월간의 재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혐의와 부정한 청탁

1.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 뇌물 기소 현황

혐의	내용		이재용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최순실(승마지원)	77억9735만원 (약속 213억원)	○	○	○	○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		○	○	
	미르재단	125억원	○		○	○	
	케이스포츠재단	79억원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재산국외도피	최순실(승마지원) 관련	78억5946만원	○	○	○	○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뇌물 공여를 숨기기 위해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77억9735만원을 송금하고, 최순실에게 준 말을 다른 말로 교체하되 삼성이 소유하다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	○	○	○	○
국 회 에 서 의 증언·감정 등 에 관한 법률 위반	2016년 12월6일 국정조사에서 "(2016년 7월2일 면담때 기부 좀 해 달라는 말을 들은) 그런 기억은 없다", "(재단 기부, 승마 지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 "최순실과 정유라를 모른다"고 증언		○				
특검 구형			징역 12년	징역 10년			징역 7년

2. 뇌물공여 시점 전후 부정한 청탁의 대상 : 이재용 승계 작업

- ① 삼성 에스디에스(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 ②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한화그룹 매각
- ③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 ④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등 외국인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 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 ⑥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 ⑦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
- ⑧ 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Ⅲ. ‘삼성 뇌물 사건’ 일지

1991년 이재용, 삼성전자 주식회사 입사

1996년 이재용,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수

1999년 이재용,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 인수

2012년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임

2013년 5월 박근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국정과제로 선정

2014년 2월

박근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중간금융지주회사 포함

정유라 국가대표 선발에 ‘공주 승마’ 의혹 제기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짐

2014년 5월~6월 이재용, 삼성에스디에스·제일모직 유가증권 시장 상장 계획 발표

2014년 9월 1일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 발표

★2014년 9월 15일 이재용-박근혜 1차 단독면담(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2014년 10월 27일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주주총회에서 합병 승인

2014년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14년 11월 19일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로 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합병 무산

2014년 11월 26일 방위사업체(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석유화학사업체(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4개 회사 한화그룹 매각 발표

2014년 11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에 이영국(삼성전자 상무) 내정

2014년 12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박상진 내정

2014년 12월 18일 제일모직 유가증권 시장 상장

2015년 2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학수법,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소급해 국고 환수) 발의

2015년 5월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취임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2015년 5월 27일 삼성물산 주주 외국계 펀드 엘리엇이 합병 비율(제일모직 1:삼성물산 0.35)이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다며 반대

2015년 6월 11일 삼성,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 시 순환출자 고리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 유권해석 의뢰

2015년 6월 23일 이재용,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대국민사과

2015년 6월 24일 국민연금공단, 에스케이 씨앤씨(SK C&C)와 에스케이 주식회사 합병 반대

2015년 7월 9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발의 :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

2015년 7월 10일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삼성 합병 찬성 결정

2015년 7월 14일 최순실,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설립등기

2015년 7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찬성

★2015년 7월 25일 이재용-박근혜 2차 단독면담(안가)

2015년 7월 29일 박상진, 독일에서 박원오 미팅

2015년 8월 26일 삼성, 코어스포츠(현 비텍스포츠)와 2015년 8월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213억 원 용역 계약 체결

2015년 9월 10일 감사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감사 착수

2015년 10월 2일 삼성전자 회사자금 5억50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송금

2015년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합병 후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삼성물산 500만 주, 삼성전자 500만주 등 1000만주를 2016년 3월1일까지 처분한다’는 유권해석 방침 결정

2015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에 위와 같은 결과 통보

2015년 11월 5일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해 ‘1년 영업 이익 30억 이상’ 상장 요건 삭제

2015년 11월 20일 삼성전자 60억, 삼성화재 25억, 삼성물산 15억 미르재단 송금

2015년 11월 25일 삼성생명 25억 미르재단 송금(합계 125억)

2015년 12월 21일 박근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에 참석 “바이오사업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2015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에스디아이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처분 삼성에 공식 통보

201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밝힘

2016년 1월 삼성, 금융위원회원회에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사전 검토 요청

2016년 2월 4일 원샷법 국회 통과

★2016년 2월 15일 이재용-박근혜 3차 단독면담(안가)

2016년 2월 24일 금융위원회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엘리엇의 5% 보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검찰에 통보

2016년 2월 26일 삼성생명 30억, 제일기획 10억, 에스원 10억, 삼성화재 29억 등 79억 케이스포츠재단 송금

2016년 3월 2일 한국거래소, 개정 시행세칙에 따른 상장 심사 기준 발표

2016년 3월 3일

국가기술평가위원회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

삼성전자 회사자금 10억78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송금

2016년 3월 13일과 3월 20일 금융위원회원회, 청와대에 삼성 전환계획 수용 불가
입장 보고

2016년 4월 11일 삼성, 금융위원회원회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보류 의사 전달

2016년 5월 7일 윤성규 환경부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방문

2016년 11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2016년 11월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변경된 상장 심사 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에 상장

2016년 12월1일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2016년 12월26일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2017년 1월 12일 특검, 이재용 피의자 조사

2017년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17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메르스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2500만원 부과

2017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이재용 구속·박상진 구속영장
기각

2017년 2월 28일 특검, 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기소

2017년 3월 9일 1회 공판준비기일

2017년 3월 23일 2회 공판준비기일

2017년 3월 31일 3회 공판준비기일

2017년 4월 7일 1회 공판

2017년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에게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문형표 전 복
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인정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 승계작업을 인정함.

p.6 각주

이 사건 합병은 2013. 12.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가 대주주(이재용 등은 소위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발행’을 통해 에버랜드 대주주가 되었음)이던 에버랜드의 제일모직패션사업부 인수, 2014. 7. 제일모직과 삼성에스디아이 합병 후 에버랜드의 제일모직으로의 사명 변경, 2014. 12. 제일모직의 상장, 2015. 7.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물산으로의 사명 변경, 이후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삼성그룹 측에서 합병의 성사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p.1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996년경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삼성에스디에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 부터 증여받은 비교적 소액의 자금으로 이건희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도움을 받아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그룹 비상장사의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위와 같은 승계작업 계획에 따라 이재용은 2014년 말경 삼성에스디에스와 제일모직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고, 2014년 말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2014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간 합병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까지 거쳤음에도 위 두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위 합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이러한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소액주주들이 영향을 받아 동조하게 되었고, 결국 위 합병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합계 금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2014. 11. 19. 위 합병이 무산되었다.

그 후 위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2017년 8월 7일 결심: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박상진·최지성·장충기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구형

2017년 8월 25일 오후 2시30분 선고 예정

IV. 재판부가 본 핵심 쟁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8월 3일~4일 재판부가 제시한 쟁점 공방을 벌임. 재판부는 특검과 삼성 쪽에 크게 5가지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는데, 재판 마지막 단계에서 재판부가 던진 질문이라는 점에서 핵심 쟁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중 재산국의 도피 관련 빼고 4가지만 검토함.

1. 현안과 ‘부정한 청탁’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쟁점	특검	삼성
승계작업과 개별 현안 사이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은 최대화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한 이후 이견희 유고시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 확보하는 것. 문제는 본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등 편법을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이 주장하는 방식의 경영권승계는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음. 삼성생명은 추가 지분 확보가 불필요했고, 삼성전자는 추가 지분 확보하려면 수조원이 들어 주주신뢰 확보하는 게 유일한 해법. 구체적인 현안도 계열사 현안이며 의결권 확보와 무관. 승계작업은 독대와 개별현안 사이 연결성이 어렵자 가공한 틀을 만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공약, 독대 관련 말씀자료, 안종범 수첩 등을 보면 삼성의 개별 현안을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음. 또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시점 경영권 승계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존재하면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계작업은 가공의 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말씀자료는 인터넷 검색으로 만들어졌고 대통령이 독대때 그대로 읽은 것도 아님.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9월 독대 때 대통령이 경영 현안 인식하고 있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성립됐고, 2015년 7월 명시적 청탁으로 바뀌어 2016년 2월까지 유지 - 삼성은 승마, 영재센터 지원 할 개인적인 관계나 그룹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면담때 두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은 특정되지 않음. 2015년 7월 명시적 청탁의 주된 근거는 말씀자료.안종범 수첩에도 승계작업 자체가 언급되지 않아 - 삼성합병 결정 뒤인 2015년 7월25일 면담에서 합병을 위

	탁에 해당되는 지	영상의 이유가 전혀 없음 - 독대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현안을 이야기하고 애로사항 청취한다면 국가적, 공익적 목적보다 사적이익 추구 목적 있다고 봐야	한 청탁이 있을 수 없음 - 이재용은 최지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지 미래전략실은 지성 책임 하에 운영
개별 현안 관련 대통령 지시 여부		- 2015년 6월 말게 국민연금공단 의결권 행사 지시, 금융위원회위원회에서 안중범에게 금융지주회사 관련 지속적 보고 등 - 대통령 지시 사실 없어도 뇌물공여죄 성립에 아무 문제없고 양형 가중 사유에 해당함. 대통령 지시 인정되면 부정 한 청탁을 강하게 추단케 하는 간접 사실 이상	- 현안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없음 - 문형표는 홍완선에게 찬성이 아닌 찬성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
개별 현안의 결과		-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은 이재용에게 차익 통한 막대한 부 축적했다는 평가 - 합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면서 까지 승인 - 순환출자고리 해소 관련 결론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반대했고, 금융위원회위원회는 중간 금융 지주회사안에 대해 저항	- 삼성에스디에스와 제일모직 상장됐지만 상속에 있어 큰 재원으로 의미 없어 - 합병은 사회와 법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지배력 강화라는 평가는 모호함 - 순환출자고리 해소 위한 500만주 처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없음 - 중간 금융 지주회사는 성사되지 않음

2.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재단 출연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쟁점	특검	삼성
영재센터에 대한 1, 2차 지원의 성격 및 경위	- 최순실→대통령→이재용→미래전략실 구조로 지원. 김중은 다른 루트로 김재열에게 부탁 - 최순실이 전달한 영재센터 자료를 대통령이 2015년 7월 25일 단독면담때 이재용에게 전달, 이에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에게 대통령 지시 사항 전달.	- 1차 후원은 김중이 "청와대 관심"이라고 말해 부담느껴 빙상연맹 맡은 김재열이 검토해 삼성전자에서 후원 - 2차 후원 관련해 대통령 면담에서 이재용이 관련 서류 봉투를 받은 것은 시간상 불가능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의 배후 및 공익성에 관한 인식	- 동시에 지원 이뤄진 이상 승마만 최순실이 배후고 재단, 영재센터 배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	- 모두 최순실의 존재를 알지 못했음 - 재단출연은 최순실이 니설 필요도 없이 전국경제인연합회

	<p>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등록도 안 된 영재센터 거액지원과 급속도로 진행된 미르재단 출연은 공익성 떨어짐 	가 나서 이뤄졌고 분담액도 할당액에 따라 분담
삼성의 재단출연이 다른 기업의 재단출연과 같은 점과 다른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검수사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모든 기업에 대해 같은 조건으로 수사할 수 없어 기업별로 입증 정도가 다름 - 이재용은 이견희 와병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 명백한 현안이 있었고, 2015년 7월25일 독대 전에 삼성 합병을 문형표 등이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른 기업과 비교해 큰 도움을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출연 기업 중 삼성만 기소 - 말씀자료 내용은 다른 독대 기업들도 동일 - 급격하게 재단 설립되고 창립총회 안하고 공익 목적 따지지 않은 것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영재센터, 재단에 대한 지원 및 출연과 개별 현안, 승계작업 사이의 대가관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 영재센터, 재단지원은 모두 같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 중요한 근거는 안중범 수첩에 적혀 있다는 것 - 말씀자료는 메르스사태, 삼성승계 문제 적혀 있고 바로 그 다음 장에 재단지원으로 되어있음 	- 독대 자리에서 지원을 요구한 적 없고, 안중범 수첩과 말씀자료는 근거가 될 수 없음

3. 승마지원 관련 사실관계 및 증거

쟁점	특검	삼성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승마지원 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한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마는 올림픽 메달 딴 적 없는 비인기 종목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잡힌 단독면담에서 승마지원을 요구해 정유라 지원 지시로 보는 게 타당. - 2014년 공주승마 의혹, 정윤희 문건 사건이 발생했고 승마인의 밤행사에서 이영국이 장총기에게 정유라 참석 못하도록 사전조치했다는 문자 보냄. - 2015년 4월 박상진이 박원오 만나 정유라 출산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임. 출산 뒤인 6월1일 박상진이 이영국에게 올림픽 플랜을 요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정유라를 어릴 때 만나보고 본 적이 없고, 이름도 정유연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첫 면담 때 정유라 지원을 요청하지 않음 - 2015년 7월25일 면담 전에 최순실, 정유라를 알았다는 사정이 없음. 7월29일 이후 박원오로부터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를 들었음. 최순실의 영향력을 감안해 최지성, 장총기, 박상진이 지원 - 공주승마 의혹 알았다면 과연 국정농단이 터졌는지 의문. 김종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 - 정유라 단독 지원으로 변질된 뒤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노력

<p>피고인들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7월25일 2차독대때는 대통령이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는데, 관련자가 대통령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뒤 갑자기 정유라 지원 발 벗고 나선 것 - 2015년 7월29일 박상진을 만난 박원오는 이미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정유라 포함하는 지원 계획 짜라고 했다고 증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순실이 받은 금품이 대통령에게 귀속되거나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단순 뇌물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대통령 사적 영역에서 최순실 의존 높다는 것만으로 경제적 공동체라고 보기 부족.
<p>마필과 차량의 소유권 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0월 살시도 패스포트에 말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되어 있자 최순실이 박원오에게 "이재용이 VIP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불같이 화냈음. - 정유라가 살시도를 삼성에서 사자고 하니 최순실이 "네 말처럼 타라"고 말해 - 삼성 승마지원이 논란이 되자 2016년 9월 최순실이 말 교환 계약을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마필은 삼성전자가 소유 - 마필 구매 계약 당사자는 삼성전자
<p>코스스포츠와 용역계약의 내용·실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과 이재용의 뇌물수수 합의에 따른 이행행위이자 뇌물공여 은폐하기 위한 자금 세탁 수단으로 허위계약을 맺음 - 코스스포츠는 계약 하루 전날 등기됐고 자본금도 최순실이 부담하며 영업 실적도 없는 최순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삼성이 정유라 지원이 아니면 코스스포츠와 용역계약을 체결 할 이유가 없음 - 선수 선발 권한은 삼성에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반대했다고 해서 선발하지 못 할 이유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계약은 정유라 포함 승마 선수 6명의 해외훈련지원하기 위한 것 - 코스스포츠 정관에도 컨설팅 사업 목적 회사라고 밝혔고, 실질적으로 여러사업을 계획해 완전히 허구로 보기 어려웠음.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실제있는 회사고 용역계약도 실제였으나 최순실의 영향력으로 다른 선수 지원 못함 - 최순실이 용역 대금 사적 사용한 걸 처음에는 몰랐고, 알고 난 뒤에는 최순실의 영향력을 알게 되어 시정하지못함
<p>승마지원이 정유라 단독지원으로 변질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일부 증언에 대한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오, 김종찬 등 대한승마협회 임원들이 정유라 지원 목적만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계약의 진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없었음. 뇌물수수 당사자 간 협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들이 최순실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박원오마저 "최순실이 다른 선수 선발 막았다"며 최순실 태도로 이 사건 지원이 변질됐다고 인정

4. 피고인들이 현안 해결 또는 각 지원행위에 관여한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증거(이재용의 관여, 미래전략실의 역할)

특검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용의 현안은 곧 다른 피고인들의 현안 - 이재용은 대통령과 세 차례 단독면담을 통해 도움을 대가로 승마지원 등 뇌물공여 합의 있었음. 국민연금공단과의 면담 때도 “이번에 무조건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히는 등 개별 현안도 개입. - 미래전략실은 컨트롤타워로서 총수를 보좌하고 계열사를 지휘하는 최고 권력기관. 김상조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조직’이라고 평가. 미래전략실은 회장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지배구조 변동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총괄 조직으로 미래전략실의 행위는 곧 총수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주요 최종 의사결정은 미래전략실이 아니라 각 계열사의 경영자들 - 이재용은 삼성전자의 부회장이고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님. 미래전략실 실장은 이재용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는 관계 아님. 최지성도 “부회장이 저한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진술. 미래전략실의 관여를 이재용의 관여로 볼 수 없음. - 이재용은 현안 해결에 직접 관여한 바 없음.

V. 이재용 재판 주요 내용

날짜	차수	내용
2017-04-07	1회	<p>모두진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영수 특별검사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사익추구와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로 이뤄졌고 그 핵심이 삼성그룹 뇌물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이재용 피고인의 정유라 승마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최순실 요청 따라 이재용에게 뇌물 요구했으며, 이재용은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300억 가까이 이르는 뇌물 공여한 사건이다. 이재용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행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은닉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 이재용 지시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삼성 임직원들이 이재용과 공모해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에 가담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고질적이고 정경유착 범죄다.” - 특검 “이 사건의 특징은 피고인들이 금품제공했다는 게 명백히 인정된다는 점이다. 다른 선수들이 아니라 정유라 1인을 위한 승마지원이라는 점이 승마지원의 핵심이다. 범행 방법의 특징은 뇌물 공여 시작과 이행 과정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다. 모두 대통령과 이재용의 단독면담에서 금품 제공 요구를 받았고, 이재용은 대통령의 요구를 최지성, 장충기 등 미래전략실 간부들에게 지시한 다음 미전실 주도로 금품 제공이 이행됐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뇌물수수 의사가 합치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익 귀속 주체가 공모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수수 공동정범이 된다. 둘이 경제적 공동체인지는 법적 쟁점도 아니고 공동정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 삼성 “이 사건의 실체는 문화융성, 체육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대가없는 지원이다. 특검이 경영권 승계 일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활동일 뿐이지 이재용 승계작업이 아니다. 세 차례 단독면담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고 합의한 증거가 없다. 재판 출연한 다른 기업은 피해자인데 삼성만 뇌물공여자로 규정된 것은 예단을 갖고 수사했기 때문이다. 승마지원은 대통령 요청으로 시작해 올림픽 승마선수 지원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재용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최순실을 알지 못했고 재판 출연 사실조차 몰랐다. 뇌물수수 공동정범 되려면 적어도 공무원에게 일부 귀속되어야 하지만 모든 이익은 최순실에게 귀속됐다.”
2017-04-13	2회	서증조사
2017-04-14	3회	서증조사
2017-04-19	4회	서증조사
2017-04-20	5회	서증조사
2017-04-21	6회	서증조사
2017-04-26	7회	서증조사
2017-04-27	8회	서증조사
2017-04-28	9회	서증조사
2017-05-02	10회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 재단 부장
2017-05-10	11회	김찬형 전 비덱 타우누스 호텔 직원 장남수 전 비덱스포츠 대리
2017-05-11	12회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불출석)
2017-05-12	13회	박재홍 전 승마국가대표 감독
2017-05-17	14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
2017-05-18	15회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2017-05-19	16회	조영준 일성신약 채권관리팀장 -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 2015년 7월 김종중 미래전략실 사장을 만났는데, 이재용에게 합병 건 수시로 보고한다고 얘길 들었고 보상하겠다고 제안함.("이건희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경영권을 승계하려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 반이 날아간다고 했다"며 "삼성 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에 실패해 이번에도 실패하면 다시 추진은 쪽팔려서 못한다며, 이번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2015년 6월 만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이 삼성물산에서 회사 사욕을 무상으로 지어 주겠다 했다고 증언.
2017-05-24	17회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팀장 -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삼성 합병 뒤 순환출자고리 해소 위한 주식 처분 관련해 '청와대 외압일지' 작성자. 전반적으로는 김학현이 의견 통보를 삼성에 하는 거 보류시키고 변경 주도해 500만주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증언. 10월14일 보고서(1000만주 처분)는 유권해석에 관해 위원장 결재까지 난 최종결정이고 본인 알기로 구두 통보까지 했는데 결론 바뀐 건 처음. 10월14일 결재 당시 정재찬 위원장이 발표 여부 청와대랑 협의 해보라고 해서 인민호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약본 메일로 보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공개하라고 함. 11월17일 김학현-김종중 만난다는 얘기 들어. 그후 김학현이 통보를 주거나 아니면 고리에 관한 자신의 의견 밝히면서 다른 의견 피력하기 시작했다고.
2017-05-25	18회	곽세봉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2017-05-26	19회	윤희만 서울세관 외환조사과 주무관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내부결재만 난 상태이고 공식 통보 안 난 상태이기에 중대 하자 있으면 변경 가능하다, 김종중 만남에 대해서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난다는 취지 답변.
2017-05-29	20회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2017-05-31	21회	-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 이 사건 이전에는 최순실이 김중이나 청와대 비서관 통해 영향력 행사하는 거로 알았다고 진술. 중장기 로드맵은 이영국 요청으로 작성된 거라고. 최순실이 언급한 삼성 승마지원은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지원으로 이해됐다고. 박상진과 만남에 대해서는 피고인

		<p>측 주장과 달리 본인이 박상진에게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최순실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해. 박상진이 정유라 포함한 승마지원계획 세워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 소유권 관련해서 2015년 11월 황성수가 말 소유에 대해 삼성 소유이니 논의가 있어서 증인이 마필 여권에 기재하고 위탁계약 체결하면 된다고 이야기. 최순실이 2015년 11월 이 위탁계약서 흔들면서 이재용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증언. 이와 같은 화가 말 소유권에 대한 것이었다고 말함. 합병 관련해서 2015년 11월 조서에는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했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언급.</p>
2017-06-01	22회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017-06-02	23회	김유경 환경부 사무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17-06-07	24회	인민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 김정주 금융위원회위원회 사무관 : 2016년 2월14일자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검토했는데 삼성 측에서 해소 방안에 대한 피드백 없었고 삼성의 원안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함. 전환 계획 승인 관련해서는 사안 중대성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할만한 사항이라고 증언했고 청와대 압박 받은 적은 없다고.
2017-06-08	25회	김연준 금융위원회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2017-06-09	26회	손병두 금융위원회위원회 상임위원
		박진해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 팀장
2017-06-12	27회	이용우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정현식 전 케이스포츠재단 사무총장
2017-06-14	28회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7-06-16	29회	정은보 금융위원회위원회 부위원장
2017-06-20	30회	-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2015년 6월29일 대통령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단 의결권 행사 챙겨 보라는 지시 받았는데,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었고, 사후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슈 되는 부분에 관해서 챙겨보라 정도 의미로 이해했다고.
		유상현 전 국민연금 해외대체 실장
2017-06-21	31회	-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조남권 만났는데 의결권 지침에 따라 연금에서 결정하고 곤란하면 전문위 부의하라고 했고. 증인은 부담 느꼈고 합병 찬성 명시적으로 한건 없지만 하라고 느꼈다고. 조남권 언급 이유 모르고 대통령 청와대 뜻이라고 한건 들은바 없다고 증언.
2017-06-23	32회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신 삼성물산 사장
		안계명 한국마사회 렛츠런 대전지사장

2017-06-27	33회	- 이윤표 전 국민연금공단 운용전략실장 : 2015년 7월6일 증인과 정제영 최준규가 보건복지부에 방문했는데, 당시 조남권은 당신네들 반대하겠다는거냐고 해서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부의가 맞다고 답변. 최홍석은 에스케이 합병처럼 검토나 논의 없이 전문위 부의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 이 얘기 듣고 증인 생각이긴 하지만 복지부 의견이 합병 찬성이고 전문위 부의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
		채준규 전 국민연금리서치팀장
		박창균 전 국민연금 전문위원
2017-06-30	34회	서증조사
2017-07-04	35회	-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안중범 수첩 관련 얘기 많이 했고 개별 면담이나 대통령이 취득한 정보를 전달하고 지시하는 내용을 충실히 기재했다고 얘기. 수첩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VIP 라고 쓰인 부분은 대통령 말을 적었고 의견을 담지는 않았다고 했어. 수첩 작성 후에 지시 이행상황 보고 하고 나서 김건훈에게 줬다고 얘기함. 말씀자료에 관해서는 대통령은 말씀자료, 말씀 참고자료를 보고서 취사선택한 후 메모해서 개별면담 들어갔다고 하고 개별면담에서 작성된 말씀자료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말씀자료 내용과 관련해서는 비서관이 작성해 자신이 확인하고 부속실에 전달했다고. 당시 내용에 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는데 다만, 재단 부분은 대통령 지시로 넣었다고 함. 본인 일정표가 맞다고 했고 비서와 같이 공유하면서 기재해놓았다고. 개별면담 관련해서 1차 독대는 몰랐고, 2차 독대 관련해 승마지원은 장충기로부터 승마지원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문의받은바없고 대통령한테도 물어본적도 없다. 3차 독대 후에 대통령의 말을 기재했다고 얘길 했고요 다른 부분 마찬가지로 누가 말하는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2017-07-05	36회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17-07-07	37회	-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증언 핵심 부분은 2015년 1월9일 대통령과 만남에서 정유라처럼 열심히 하는 학생 잘 키워야 하는데 왜 기를 죽이냐고 해서 대통령이 최순실과 매우 가깝고 정유라를 아낀다고 생각. 박상진과 만남 문제 됐는데, 증인 기억으로 2015년 1월8일경 임대기와 만났고 2015년 3월16일 임대기, 박상진을 2015년 6월24일 박상진, 이영국 만났다고 얘기. 그때 정유라 지원할 생각이라고 얘기. 박상진과 통화 과정에서 박상진이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가 도쿄올림픽 나갈수있도록 지원 지시했는데 이제 본격 지시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박상진 진술과 다른 진술. 또 청와대에 전달되길 바라는 것 같았다고 자신의 짐작 이야기. 영재센터 관련해서는 2015년 8월20일이 영재센터가 BH 관심사항이라고 했는지에 대해, 그 이후에 알게 되서 그때는 이야기 할 수 없었다고.
2017-07-12	38회	- 정유라 : 최순실이 국내에 있던 말 두 마리를 팔기 위해 독일로 가져왔다고 해. 2015년 8월26일 코어스포츠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모른다고. 말 가격, 소유관계는 알지 못했음. 2015년 8월말경 박원오가 중요한 손님이 왔다 시승해보라고 해서 황성수 앞에서 시승한 것. 박원오가 삼성이 선수지원 문제로 왔다고 했음. 그때 삼성의 승마 지원을 알게 됐다고. 그 후 최순실로부터 삼성이 6명을 선정해 4명을 올림픽 단체전에 출전시키고 그 중 한명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하지만 증인이 최순실에게 "나만 지원받는거냐" 물었더니 "그냥 조용히 있으라. 때 되면 오겠

		<p>지 왜 계속 물어보느냐'며 화를 냈다고. 말 관련해서도 최순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삼성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살시도는 최순실이 이름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 다른 선수 오기 전에 삼성에서 자신만 지원한다면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바꿨다고. 그리고 최순실은 증인이 살시도를 삼성에서 구입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그럴 필요 없고 내꺼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해. 비타나는 부상이 심각했고 안드레아스도 알고 대회 참가를 만류했다고. 블라디미르, 스타샤 교환 때는 시승해보고 교환을 결정.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2016년 9월27일 이사. 2016년 10월 말경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교환했는데 안드레아스가 삼성에서 자신에게 주어야 할 돈이 안 들어온다고 짜증냈다고 말.</p>
2017-07-14	39회	<p>김준현 우리은행 삼성타운 직원</p> <p>-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주로 의견 제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5%가 계열사 소유 재산 규정을 초과했고 이건희가 견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건희 외병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비즈니스 측면과 경영권 승계라는 측면이 모두 있다고. 이재용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주적인 계열사의 결정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이 주체로 한 것이어서 승계와 무관하지 않아. 외병으로 시급성이 증대 됐다고. 제일모직과 에스디에스(SDS) 상장 등은 승계작업의 기초작업이라고 표현을 했고, 엔지니어링 합병 시도에 대해서도 이재용의 경영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표현. 생명의 금융지주전환도 내부 지분이 현재로서는 높기 때문에 내부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지주전환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주전환이 되면 그 자체로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김종중으로부터 증인에게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 합병도 이사회 개최 전에 김종중으로부터 들었다고. 본인이 느끼기에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느낌. 이건희 외병 이후 삼성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물어봤더니 김종중이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본인이 거의 매일 회의하고 40%는 이재용이 결정하고 나머지는 참모들 논의로 결정된다고 들었다고 . 대통령의 역할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에 비춰 보면 원론적인 시그널 표시로도 긍정적 영향력으로 작용. 삼성생명 금융지주전환 추진 이유에 관한 피고인측 주장은 금융 통합시스템 하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주장.</p>
2017-07-17	40회	<p>김시진 삼성물산 과장</p> <p>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p>
2017-07-18	41회	<p>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p> <p>손관설 삼성생명 상무</p> <p>이승재 삼성생명 전무</p>
2017-07-19	42회	<p>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p> <p>박근혜 전 대통령(불출석)</p>
2017-07-21	43회	<p>김병률 전 코스피 상무</p> <p>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p> <p>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p>
2017-07-25	44회	<p>- 이영상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 2014년경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근무했으며, 최근 발견된 2014년 7월~9월 청와대 문건 중 수기 메모에</p>

		<p>대해 증언. 우병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 검토 해보라고 지시받아 검토했다고 증언. 지시 내용이 삼성 경영권승계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경영권이 현안이라 승계 문제 위주로 보고서 작성했고, 초안으로 메모 작성했다고 증언. 기초라고 표현했는데요 전반적 흐름은 삼성이 국가 경제 차지 비중 높고 이견회 유고 장기간 돼서 경영권 승계 개시되면 정부 관여부분 생긴다, 승계과정에서 삼성 흔들리는 거 국가경제 바람직하지 않고, 불법 있어서 안되서 국가경제 도움되는 방향으로 작성. 메모는 상당히 검토된 상황에서 작성됐고 경위는 기억 안난다고 했다. 최종 보고서중 메모 중 무엇이 들어갔는지 기억 안나지만 비슷한 기초로 들어갔음. 민정비서관 보고 이후 활용여부는 알지 못하며, 구체적 집행 계획 지시받거나 삼성경영권승계 도우라는 지시 받은바 없다고 증언</p>
2017-07-26	45회	최순실(증언거부)
2017-07-27	46회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 등(불출석)
2017-07-28	47회	김창근 에스케이 이노베이션 회장 등(불출석)
2017-07-31	48회	<p><피고인 신문></p> <p>-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키획팀장(전무)</p> <p>"장충기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 관련 받았을 때 이재용-박근혜 독대 때 지원 요청 있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다", "올림픽 지원 관련 협의하다 박원오가 먼저 정유라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과장 경질과 대한승마협회 파견 직원 관련 일련의 사태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최순실이란 사람의 말을 거스르면 그것보다 더 한 일이 회사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 그런걸 안 당하기 위해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려 한 것 같다", "최순실이 개입해서 선수 선발이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순실의 배경 때문에 끌려다닌 부분이 있다."</p>
		백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2017-08-01	49회	<p>-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p> <p>"이 사건 발생 후 논의 과정에서 최지성에게 이재용이 2014년 9월15일 대통령과 만나 한화가 잘 못하니 대한승마협회를 삼성이 맡길 바라고, 이재용이 대통령 말을 거절 못해 승낙했다고 들었다", "최순실과 대통령의 친분은 몰랐다. 대한승마협회 취임하고서도 관심을 많이 못 가져 업계 소식을 알지 못했다", "2015년 7월25일 오후 4시30분 회의에서, 이재용은 '대통령이 삼성이 한화만도 못하다, 협회 임원 교체해라하며 15분가량 승마 이야기만 하더라. 눈빛 레이저빔이 뭔지 알겠더라'라고 말했다", "정유라 지원은 최순실의 요청이었다. 대통령 말은 공적인 의미에서 승마 선수 뽑아서 전지훈련을 보내 달라는 거였다", "원래 올림픽승마지원을 하면서 정유라 등 선수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최순실의 겁박으로 정유라 1인에 대한 지원 종료됐다"</p>
		<p>-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p> <p>"대통령께서 특정 선수 지원하라고 얘기한 바는 없고, 이재용 부회장이 집중하는 것도 올림픽 제대로 준비 안한다고 질책 받은 것이다. 박상진, 황성수가 보고할 때도 최순실이 자기 딸 지원 안 해준다고 대통령께 삼성을 비방했다는 취지로 들은 것 같다", "특검에서는 '2016년 2월15일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독대하고 오셔서 최지성 실장실로 저를 불러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라며 봉투를 건네줬다고 진술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보니 이 부회장이 대통령한테 봉투를 받아 제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시간상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독대 당일 안중범 전 수석을 만나 받은</p>

		<p>것 같다", "특검 조사에서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최순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답변했지만, 최순실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비난하고 험담하고 해코지할 우려가 있었고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 입장에서 피해자가 되니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p>
2017-08-02	50회	<p>-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저는 이건희 회장이 임명한 실정이고 원칙적으로 삼성 전체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제가 삼성 중요 현안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는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이다", "정유라 승마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결정했다. 미래전략실 업무로 조직의 장으로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지원의 개요는 얘기해 드린 것 같지만 정유라 지원 관한 얘기는 끝내 보고하지 않았다", "경영권 승계 문제가 왜 대통령하고 관련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일한 아들이고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회장 유고되면 부회장이 그냥 회장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경영권 승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p>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8-03	51회	<p>-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4년 9월25일 면담에서는)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대한승마협회 삼성이 맡아 달라, 올림픽을 준비해달라", "국내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정윤희 씨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재판 과정을 통해 (정윤희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선수라는 것을) 알았다", "(2015년 7월25일 면담에서는) 갑자기 대통령이 삼성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말을 사줘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가 삼성 현안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없다", "(2016년 2월15일 면담때) 재단 출연에 대한 이야기는 기억이 없다. 미르, 케이스포츠 이름도 언론보도되고 나서 들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삼성생명 사장님이랑 경영진들이 고민해서 했고 미래전략실 전문가들이 검토했겠지하고 저한테 보고도 아니고 정보공유만했다", "(삼성합병도) 저희 회사 관례가 사업 결정은 회사 사장님들이랑 미래전략실에서 검토하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지분이 높고 낮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경영진과 미래전략실이 의견 냈을 때 저도 당연히 따랐다", "이건희 회장 입원 후 그룹 주요사항은 최지성이 정보공유한 건 알려준거고 승인 받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이면 2, 3세건 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곳은 올바른 경영자 자리잡기 위해선 사회의 인정, 비전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p>
		재판부 쟁점 공방
2017-08-04	52회	재판부 쟁점 공방
2017-08-07	53회	결심

이재용 재판 주요 쟁점에 대한 반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홍순탁 /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1. 서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이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이재용에 적용된 뇌물죄의 핵심 연결고리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다. 특검이 지목한 뇌물제공의 대가 중 하나가 불공정한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형표)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완선)이 그 당시 부당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죄 입증에 중요한 한 축이 완성되었기에, 적어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의 부적절성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재용과 이재용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합병과 관련된 수많은 주장을 쏟아냈고, 많은 언론이 그 내용을 검증 없이 삼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보도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있으면, 합병과 관련된 쟁점이 아직도 남아있고 합병과 관련된 논란이 혼란스럽다고 느껴진다.

이재용은 최후진술에서 합병에 따라 본인이 취하게 된 이득은 없고, 국민들의 노후자

금에 손해를 주려고 한 의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변호인은 적정 합병비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특검이 주장한 적정 합병비율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나아가 이재용 변호인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해 무산되었더라면 지분가치의 큰 손실을 봤을 것이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적절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결정이 어떤 점에서 부당했는지, 이재용과 이재용 변호인의 주장의 논리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1) 합병비율 결정과 이재용의 이해득실은 전혀 관계가 없을까?

이재용은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 합병으로 본인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심문과정에서는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은 두 회사 경영진이 결정했을 뿐이며 본인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주식회사간 합병에서 중요한 건 두 회사를 물리적, 화학적으로 잘 결합시키는 문제만이 아니다. 각각 회사에 존재했던 주주권(지배권)을 재편해서 합병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합병회사에 대하여 얼마의 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각 회사 주주의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시장가치가 각각 200과 100인 회사 A와 B가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100이라는 합병시너지가 발생해서 합병회사의 가치가 400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병시너지가 발생한다는 확신만 있다면, 회사 A, 회사 B 그리고 A와 B 주주들은 모두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득이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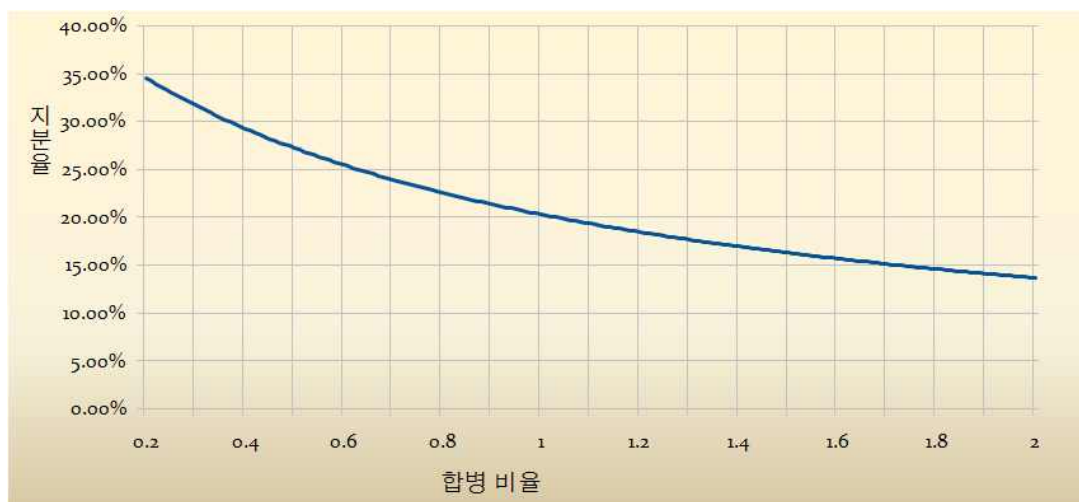
B회사 지분 30%를 보유한 주주를 생각해 보자. 합병비율이 B회사에 다소 불리하게

산정되어 합병 후에는 지분을 5%만 확보한다고 가정해 보면, 합병 전 그 주주의 지분가치는 $100 \times 30\% = 30$ 이지만, 합병 후에는 $400 \times 5\% = 20$ 으로 감소한다. 합병시너지가 분명히 존재할지라도 합병비율 협상을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합병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합병의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을 통합시켜 놓으면 합병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해야 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합병 후 주주권을 정하는 핵심인 합병비율 결정이 대주주와 소액주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재용 일가(이재용, 이견희, 이부진, 이서현)는 합병기준일에 제일모직을 42.2%, 구 삼성물산은 1.4% 보유하고 있었다. 제일모직 지분을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병비율과 이재용 일가의 합병 후 지분율을 추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이재용 일가의 합병 후 지분율이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 이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 아래의 <그림1>이다.

<그림 1> 합병비율과 이재용 일가의 지분율



이 그래프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이 진행될 때 이재용 일가의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조건이다. 이재용 일가의 의사결정이 이러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회사가치를 단순 합산하면 약 30조원 정도였다. 합병 후 재상장된 통합 삼성물산의 가치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재용 일가의 입장에서는 합병비율 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이 1% 올라간다면 그 때마다 약 3천억 원의 지분가치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합병비율이 1대1이라면 이재용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이 20% 수준인 반면, 합병비율이 1대0.35라면 이재용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이 30%를 넘을 수도 있다. 합병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재용의 일가의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과 지분가치에는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합병비율이 자신의 이해득실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억지주장일 뿐이다.

2) 이재용이 이득을 보면 국민연금은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

합병비율 결정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어떤 비율로 합병하든 합병 후 회사의 가치는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합병비율 결정에 따라 어떤 한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면 다른 주주의 지분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지분가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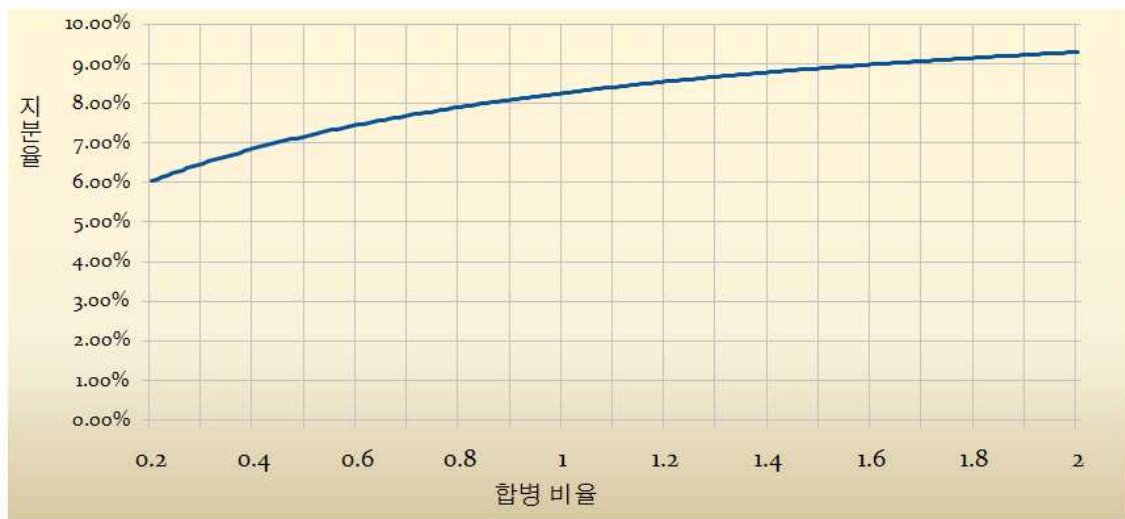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합병기준일에 구 삼성물산을 11.2%, 제일모직을 4.8% 보유하고 있었다. 비율로는 구 삼성물산을 2배 이상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두 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는 약 1조원 내외로 비슷했다. 지분가치가 동일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는 합병비율과 무관했다는 주장이 있다. 국민연금이 한동안 그러한 해명을 고수했고, 많은 경제신문들이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썼다. 심지어 이재용 재판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완선은 그러한 판단에 따라 합병에 찬성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재용 일가에 대해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합병비율과 국민연금의 지분율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된다. 합병비율과 국민연금의 이해관계가 무관하다는 주장이 맞다면, 그 그래프는 수평으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합

병비율로 결정되든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이 같게 나와야 합병 후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했던 지분조건을 가지고 합병비율과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계산한 결과는 아래의 <그림2>와 같다. 합병비율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상승한다.

<그림 2> 합병비율과 국민연금의 지분율



합병 후 각 주주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가 지분율이 지분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이 높았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될수록 합병 후 지분가치가 올라간다는 조건에 놓여있다. 이재용 일가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재용 일가에 이득이 생기면 생길수록 국민연금의 손해는 증가한다.

합병이라는 거래에서 이러한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이해상충관계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중의 하나는 각 거래구조에 내재해 있는 핵심적인 이해상충관계를 파악해내고, 그 이해상충관계를 잘 조율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합병을 진행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합병비율 결정의 의미, 즉 합병거래에 내재해 있는 핵심적인 이해상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 점에서 이재용이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탐할 정도의 못난 놈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만약 합병비율 결정이 국민연금 지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몰랐다면, 본인의 이해득실과 국민연금의 이해득실이 정반대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재용은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중 기본중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자신의 무능력과 식견 없음을 강조하는 상황은 삼성에게도 그리고 한국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3)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은 그 공정성을 따져 볼 필요도 없는 객관적인 수치인가?

이재용 일가와 국민연금의 이해득실을 결정한 것은 1대0.35라는 합병비율이었다. 이재용 변호인은 1대0.35라는 비율이 주가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완전경쟁시장인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보다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주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이 기업가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산정한 어떠한 형태의 적정 합병비율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한 최선의 평가자료이나, 단기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주가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투자자의 심리, 수급 등에 따라 급변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업의 주가를 보면, 매일 매일 변동하며 때로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 기업의 실질가치가 주가가 요동치는 것처럼 변동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와 그 기업의 실질가치는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가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비율을 계산해 봐도 그 점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래 <그림3>은 제일모직이 상장한 이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주가에 따라 매일매일의 합병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이다.

<그림 3>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추이



만약, 두 회사가 2015년 1월초에 합병을 결정했다면 1대0.45에 근접한 합병비율이 도출되었을 것이다. 하다못해 2015년 4월초에 합병을 결정했다더라도 1대0.4는 훌쩍 넘는 합병비율이 도출된다. 이재용 변호인은 주가에 따라 산정한 합병비율이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라고 주장했는데, 그 합병비율이 날짜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합병과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주가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비율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합병비율 산정의 전부라면, 합병 협상의 핵심은 날짜를 택일하는 문제가 된다. 합병 기준일을 5월 15일로 정할 때와 5월 22일을 정할 때의 합병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두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영 의사결정이 날짜 선택에 따라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요행의 문제로 환원된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그러한 주장보다는 하루하루 주가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두 회사 간 협상을 통해 합병비율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회사는 각각 자신의 회사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한 평가를 상대방 회사에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합병과정에 대한 보다 적절한 해석이다. 달리 표현하면 합병 날짜를 선택하는 문제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병대가를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 삼성전자는 2016년 하반기에 하만을 80.2억 달러에 인수했다. 2014년에는 삼성이 한화에 테크윈과 종합화학을 1.9조 원에 매각하는 사건이 있었다. 매각가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하만을 주당 112달러, 전일 종가보다 27.8%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했고, 삼성이 한화에 삼성종합화학을 매각한 주당단가는 48,900원으로 전일 종가에 약 70% 프리미엄이 가산된 결과였다.

왜 주가에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거래마다 다를까? 사는 쪽과 파는 쪽이 단순히 주가만 본 것이 아니라 각각 기업가치를 계산하고 협상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방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 합병비율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합병의 이해당사자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병 협상에 임하는 두 회사의 경영진이 각각 자기 회사와 자기 회사의 주주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서와 같이 두 회사의 경영진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룹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많은 조항인 셈이다.

4) 이재용 변호인의 주장대로 산정방법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가?

이재용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특검의 주장한 적정 합병비율 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변호인은 특검이 참고한 ISS나 기업지배구조원의 적정 합병비율 산정의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구 삼성물산에 유리한 평가 방법이 적용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재용 변호인은 평가기준일로 2015년 3월말이 아닌 2014년 12월말로

선택한 것이나,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영업가치 산정시 적용한 배수(multiple) 적용 등에서 구 삼성물산에 유리한 방법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평가기준일과 관련하여 합병발표는 2015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가장 최근 시점인 2015년 3월말의 결산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변호인은 구 삼성물산이 2014년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2015년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정기준일 선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많은 기업의 실적이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 제일모직 사업부에는 레저부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워터파크의 경우 여름에 좋은 실적을 보인다. 계절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연간 실적을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최근 실적에 의미 있는 변동이 있다면, 2014년 연간실적이 아닌 2015년 1분기 실적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2014년(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각각 6,524억 원과 2,134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3배 차이였다. 그런데, 2015년 1분기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구 삼성물산이 488억 원, 제일모직 60억 원으로 8배 차이로 벌어진다. 2015년 1분기에 구 삼성물산도 실적이 악화되었지만, 제일모직은 그보다 더 심하게 실적이 악화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산정기준일을 바꾸면 제일모직에 더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ISS가 1.21이라는 적정 합병비율을 도출한 최종 보고서상의 결과를 활용하여 영업가치 산정기준일만 2015년 3월말로 산정해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 결과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영업가치 산정기준일 변경한 ISS 평가결과

2014년 12월말 기준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비율
영업가치(십억원)	6,175	5,672	
비영업가치(십억원)	13,533	6,322	
차입금(십억원)	3,063	1,421	
자기자본가치(십억원)	16,645	10,573	
주식수(백만주)	151	116	
주당가치(원)	110,232	91,170	1.21
2015년 3월말 기준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비율
영업가치(십억원)	1,848	638	
비영업가치(십억원)	13,533	6,322	
차입금(십억원)	3,063	1,421	
자기자본가치(십억원)	12,318	5,539	
주식수(백만주)	151	116	
주당가치(원)	81,573	47,761	1.71

(주 : 2015년 3월말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나머지 수치는 그대로 적용함)

2014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각각 6.2조 원과 5.7조 원이었고, 합병비율이 1.21이었다. 그런데 2015년 3월말 실적으로 기준으로 동일한 배수(multiple)을 적용해 보면, 구 삼성물산의 영업가치가 1.8조 원으로 크게 하락하지만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는 0.6조 원으로 그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합병비율이 1.71로 상승하게 된다.

상장주식의 가치평가의 경우, 이재용의 변호인은 ISS가 구 삼성물산의 상장주식의 평가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그대로 쓴 것이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고려해야 하고, 상장주식일지라도 지배력 유지를 위해 매각할 수 없어 유동성에 제한이 있으니 일정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러한 접근법을 제일모직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도 매각을 하려면 세금을 고려해야 하고,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더 많기에, 구 삼성물산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적용된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 삼성물산의 영업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한 배수(multiple)가 높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경기하락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더 낮은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수적인 평가방법을 제일모직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삼성물산의 사업은 건설과 상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분야 모두 국내 1위를 다투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일모직의 사업은 패션, 레저, 식음료, 건설(조경)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산업의 성장세도 높지 않고 구 삼성물산과 비교하여 해당 업종 내 경쟁력이 우수하지 않다. 구 삼성물산의 적용하는 배수가 낮아지면 제일모직에 적용하는 배수도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이재용의 변호인이 구 삼성물산 기업가치 산정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주장한 것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일리가 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그대로 제일모직 기업가치 산정에 적용해 보면, 제일모직 기업가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합병비율은 두 회사의 적정 기업가치 간의 상대비율로 계산되는 것이고,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두 회사에 균형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용 변호인이 주장하는 방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적정 합병비율은 높아진다. 이재용 변호인이 복잡하게 많은 주장을 했지만 제 발등을 찍었을 뿐이다.

5)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하여 무산되었다라면 더 큰 손해가 발생했을까?

이재용 변호인은 흥완선의 증인 심문 과정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하여 무산되었다면 막대한 지분가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의 변호인은 합병발표로 인하여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이 있었고, 합병이 무산되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약 4,400억 원)의 지분가치 하락이 예상되며, 구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 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추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합병발표로 약 3,000억 원 내외의 지분가치가 상승이 있었다는 주장은 합병발표 후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추가 급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합병 발표 전일인

2015년 5월 22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는 2조 370억 원이었지만, 합병 발표 후 5월부터 7월초까지 그 지분가치가 2,000~3,000억 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5년 8월 6일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는 2조 190억 원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오히려 8월 24일에는 지분가치가 1조 6350억 원까지 하락하여 합병 발표 전과 비교하여 4,000억 원 감소하였다.

합병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주가가 단기간 동안 급등락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단기 급등락을 근거로 합병 효과나 합병 시너지를 논하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합병시너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통합 삼성물산 주식을 그대로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2017년 6월 30일) 기준의 지분가치는 1조 8,740억 원 수준이다. 합병 발표 전보다 1,630억 원 정도 지분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합병시너지나 합병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부족한 결과인 셈이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주가가 20% 하락하여 4,000억 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편협한 의견이다. 4,000억 원대의 손실의 근거로는 합병을 반대한 ISS 보고서에서도 합병이 무산되면 구 삼성물산 주가가 22%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는 것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된 이후 한 달 사이에 20% 내외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을 제시했다.

ISS를 인용한 부분은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였다. ISS 보고서는 합병발표로 인해 구 삼성물산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예측으로, 합병발표 전에 비해 전체 코스피 주가는 3% 정도 하락했는데 구 삼성물산 주가는 19% 내외로 올랐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변수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ISS의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정당한 평가를 받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삼성물산 합병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의 경우 합병반대 주식매수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매수세 유입으로 합병 주주총회일까지 두 회사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합병이 무산되어 단기매매차익을 노렸

던 물량이 시장에 때물로 나옴에 따라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락한 측면이 강했다. 즉,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 흐름을 합병 무산 시의 일반적인 주가 패턴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무산 후 한 달 동안의 주가변동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국민연금은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단기투자자가 아니라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합병이 무산되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존재한다. 2016년 CJ 헬로비전과 추진한 합병이 무산되었을 때 SK텔레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그 하락폭을 만회하고 오히려 상승하였다.

합병이 한번 부결되더라도 재추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합병 부결 시의 국민연금 지분가치 하락 주장은 더 설득력이 없다. 당시 주식시장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식이든 합병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삼성그룹은 여러 차례 합병이 한번 부결될 경우 재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협상에 임하는 기본 원칙일 뿐이다. 협상에 임하는 어떤 당사자도 자신이 양보할 카드를 보여주면서 협상장에 나가지는 않기 때문이다.

합병과정에서 발행한 3조 원 상당의 잠재부실 주장은 합병회계처리 전체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강조하는 전형적인 앞뒤자르기식 주장이었다. 현행 회계처리기준상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피인수된 기업을 얼마나 비싸게 샀는지 평가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을,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차익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구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했으며, 3조 원 상당의 부실(정확히는 2.6조 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을 계산하는 중간 절차에 불과하다.

합병회계 특성상 피인수된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를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산, 부채별로 평가이익도 발생하고 평가손실도 발생한다. 구 삼성물산의 경우 2.6조 원의 평가손실과 함께 1.2조 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거쳐 합병당시 장부상 순자산은 12.1조 원이었지만 순자산 공정가치는 10.7조 원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합병의 대가로 구 삼성물산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는 8.7조 원이었기 때문에, 10.7조 원과 8.7조 원의 차이인 2조 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거치기 전에 염가매수차익을 계산했다면 3.4조 원(12.1조 원 - 8.7조 원)의 결과가 나왔겠지만, 공정가치 평가결과 1.4조 원의 순감소(2.6조 원 - 1.2조 원)가 이루어졌고, 염가매수차익이 3.4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조정된 것이다.

따라서 합병회계처리 전 과정을 표현한다면 2.6조 원 상당의 잠재부실을 반영하고서도 2조 원의 이득을 봤다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 즉, 통합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부실요소를 고려하여 충분히 싸게 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결론 : 최소한의 손실은 얼마일까?

앞에서 언급한 문형표와 홍완선의 재판에서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적정 합병비율이라는 것이 평가자에 따라 달라지며, 특검이 제시한 손실액은 1대0.46과 1대0.35의 차이인데, 1대0.46 조차도 합병을 찬성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산출된 수치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적정 합병비율을 단일한 수치로 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각 회사의 기업가치 산정에 여러 가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일한 값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기업가치 산정에 내재된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이 진행된 2015년에 여러 기관에서 적정 합병비율도 도출되었다. 그러한 비율 중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산정된 비율을 활용하여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문형표와 홍완선 판결에는 국민연금이 3차례에 걸쳐 적정 합병비율은 산정한 것으로 나온다. 그 중 2차와 3차는 합병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외압이 가해진 상황에서 도출된 것인 반면, 1차 산정 결과인 1대0.64는 비교적 외압 없이 객관적으로 산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1대0.92라는 적정 합병비율은 도출했고, ISS는 최종적으로 1대1.21이라는 적정 합병비율을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적정 합병비율의 범위는 1대0.64에서 1대1.21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정 합병비율 범위를 활용하여 손실액을 산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약 3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의 범위로 계산되어, 특검이 제시한 손해액인 1,388억 원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 그 구간의 최소값의 손실액을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약 3천억 원이 되며, 동일한 기준으로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계산할 경우 1조 8천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및 쟁점

이상훈 /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 김도희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I. 들어가며

삼성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각 계열사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개별적인 현안사업일 뿐이고,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라는 프레임은 특검이 만들어낸 허구의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이 부분을 강조한 이유는 단지 특검의 ‘경영권 승계작업’ 주장을 부정하는 소극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개별 현안사업으로 쪼갤수록 뇌물 제공자 수수자의 현안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이재용의 고의의 정도, 대가관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만일 공소장에서의 순환출자 해소 건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한 순수한 개별 현안 사안이라면, 고작 그 물량을 줄이기 위해 최대 재벌이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었겠냐는 항변이 설득력을 더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장에 언급된 개별사건들이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결된 것인지 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이재용이 구속된 것도, 당초 특검이 박 전 대통령 쪽에 뇌물을 건넨 목적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로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전 과정에서의 대가를 바라면서 금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됐다는 취

지로 피의사실을 변경해 가능해졌다.

그런데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경영권 승계작업은 영화 시나리오처럼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전개되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넓고, 더구나 삼성과 같이 수많은 계열사들이 회로도나 같은 출자 구조로 얽힌 경우에는 단일한 시나리오로만 진행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어떤 돌발변수가 나올지 몰라서 최고 권력자에게 뇌물을 줄 유인이 있는 것이다.

반면 이재용의 변호인은 경영권 승계작업이 인정되려면, 특검 주장과 같은 순서로 이어지고 논리적 상관성을 갖는 유기적 과정이어야 하고, 이러한 유기적 과정까지 박 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변론하였는데,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고려할 때 독자적인 논고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판과정에서 공소장에서의 개별사안들과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관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특검으로서는 어려운 작업인데, 왜냐하면 개별사안은 각각 고유한 취지가 있고 이를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의 효율적 관리라는 고유한 취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고, 삼성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 경영권 승계작업과 연결된 의도를 파악해야 했다. 즉, 사업구조개편과 승계작업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쟁점인 경영권 승계작업과의 연결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IFRS4, 순환출자고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낯선 용어들이 튀어 나와서 이해가 쉽지 않고, 그러다보니 삼성의 주장이 얼핏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발제에서는 중요한 쟁점인 경영권 승계작업이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 여긴 점을 감안하여 경영권 승계작업을 중심으로 그 실체가 무엇인지와 이를 부인하는 삼성의 항변의 부당성을 우선 따져본 후, 나머지 쟁점들도 살펴보도록 한다.

II. 이재용의 범죄사실 요약

이재용의 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 위증 등 5가지다. 요지는,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회사돈을 횡령했고, 이 돈을 독일로 보냄으로써 재산국외도피를 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을 숨기기 위해서 말세탁을 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이재용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3번의 독대를 하였다.

혐의명	혐의 내용
뇌물공여	경영권 승계 등에 도움을 받고자 비텍(최순실 소유)에 77억여원 제공
횡령	삼성전자자금 77억원 비텍에 제공, 각 계열사 자금 220억원 미르·K 스포츠재단 제공
재산국외도피	최순실에게 자금지원하면서 현지 용역비 등으로 허위 신고
범죄수익은닉	최순실지원비용 일부 회수 뒤 허위 기재 등으로 은닉
국회 위증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

공소장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삼성 실무자들이 금감위와 공정위에 접촉을 하였다고 하고,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를 두고 특검은, 삼성이 금감위와 공정위에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삼성은 계열사의 개별 현안에 관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주무부서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필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II.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란

1. 일반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과 삼성의 특징

경영권 승계 과정은 불법행위가 개입될 위험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론상 50%이상(대주주가 경영권을 물려줄 때에는 할증액을 추가로 더하여 세율이 65%까지 올라감)의 상속세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 분배를 고려하면 상속과정에서 지배권이 희석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부모가 누린 지배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욕심을 내면서 불법이 개입되는 것이다. 삼성도 마찬가지로이어서 피고인 이재용이 이견희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물려받으려고 하다보니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삼성그룹만의 특징이 있다. 다른 그룹과 같이 상속세를 절감¹⁾한다거나 지분을 하락의 위험을 만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그룹만의 취약한 지배구조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이러한 삼성그룹 고유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첫 번째 문제점은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이 나머지 삼성 계열사들 전체를 합친 것보다 3배 이상일 정도로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인 반면 지배주주의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 지분율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견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인 2013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의 내부지분율을 살펴보면, 이견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38%, 피고인 이재용은 0.57%에 불과하다²⁾. 피고인 이재용은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25.10%)와 삼성 SDS(11.25%)를 중심으로만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삼성전자 지분은 미미하다.

따라서 피고인 이재용으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와 삼성SDS주식을 삼성전

1) 이견희 회장의 상속재산은 삼성생명 주식 20.8%와 삼성전자 주식 3.4%가 대부분으로서 상속세는 약 8조원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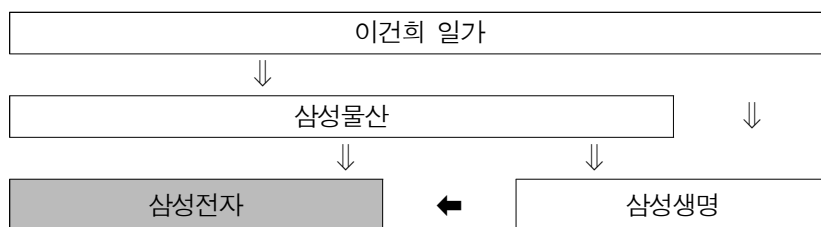
2) 지배주주 일가 이외에 계열사 전체를 합하면 17.3% 정도이고, 그 중 삼성생명이 7.54%를 보유한다.

자에 대한 지배력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이견희 회장의 지분 3.38%만 상속 받기에는 취약한 내부 지분율의 문제점을 그대로 떠안게 되고, 그렇다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직접 늘리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이재용은 이견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던 구조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이 구조가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배구조의 두 번째 문제점이다.

즉 일반인이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삼성의 문제점이 있는데, 삼성그룹은 기업집단 중 금융이 비금융을 지배하는 거의 유일한 그룹이라는 것이다. 즉 이견희 회장은 삼성전자에 대한 취약한 내부 지분율을 대신해 1대 주주인 삼성생명(7.2%),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 중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을 통해 지배했기 때문에 결국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였다.

<삼성그룹의 지배형태>



그러나 이러한 지배구조는 금산분리 이슈 등 법률적인 논란을 안고 있고, 실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삼성생명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구체적인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를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만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당부분 매각하게 되면 이견희 등의 삼성전자 및 그 자회사들에 대한 지배권에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은 이러한 위협들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든 이를 피해나갔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의 보험회사 회계감독기준 강화 등 새로운 법률적 위협들이

계속 다가왔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은 시기와 범위가 변수일 뿐 일정부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견희 회장이 건강했다면 이러한 작업을 천천히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바람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려고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 이재용은 일반적인 경영권 승계에서의 과제, 즉 ① 이견희 사망 후 8개월로 예상되는 막대한 상속세를 최소화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 ② 모친과 두 여동생과 사이에서 그룹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과제와 함께 삼성 그룹 특유의 과제, 즉 ③ 에버랜드와 삼성SDS주식을 어떤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및 ④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을 매개로 한 삼성전자 지배라는 불안정한 그룹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경영권 승계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영권 승계작업에 따른 구체적인 시나리오

경영권 승계작업은 수년 또는 10년 넘게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할 지를 사전에 모두 확정할 수는 없고 상당부분 시기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와 삼성 SDS 상장건만 해도, 위 두 회사는 피고인 이재용의 사실상 유일한 보유지분이기 때문에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두 회사의 상장은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런데 2012년 초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고인 이재용은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2012년 2월 피고인 이재용의 인터뷰 기사³⁾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SDS의 상장설에 대해 "현재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수년 내에는 상장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시점이 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상장할 계획은 없다"며 "오랜 동안 안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위 인터뷰 다음날에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부사장은 “상당기간동안” 에버랜드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굳이 피고인 이재용의 인터뷰

3) 2012. 2. 8. 자 머니투데이 기사 <단독>이재용 사장 "삼성SDS·에버랜드 상장계획 없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20711015459198&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뷰가 아니더라도 이재용이 당장의 현금 필요성이 있지 않는 이상 합병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서둘러 상장하지는 않을 것이고, 특히 그 중 계열사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계열사 지분 정리를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상장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2014년 5월 이견희가 쓰러진 지 6개월 뒤인 11월에 삼성SDS가, 12월에는 에버랜드가 연달아 상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이재용은 12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세계부호 순위에서 184위를 기록하는 거부가 되었다(국내에서는 이견희에 이어 2위).

이와 같이 경영권 승계작업은 “에버랜드와 삼성 SDS는 상장한다”라는 전체적인 방향을 우선 정한 후, 이에 따른 구체적 시나리오는 대부분 그때그때 상황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변형하면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와 삼성 SDS 상장 이외에 삼성이 앞에서 말한 경영권 승계작업이자 과제를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할지에 대해 이를 예측하는 여러 시나리오들이 과거에 여러 개 있었다. 그 과정에서 2013년 이견희 회장이 신경영 20주년 기념 만찬을 2차례나 연기하고, 8월에는 폐렴을 이유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퍼졌고, 하반기부터 삼성그룹의 지분변화와 합병 등 그룹을 재편하는 사건들이 많아졌다.

2013. 9. 23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인수
2013. 9. 27	삼성 SDS, 삼성 SNS 1:0.46 비율로 흡수합병
2013. 11. 4.	삼성에버랜드의 건물관리사업 매각
2013. 11. 4.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사업 분할
2013. 12. 13.	삼성전기, 삼성카드 지분 3.81% 삼성생명에게 양도
2013. 12. 13.	삼성물산, 삼성카드 지분 2.54% 삼성생명에게 양도
2013. 12. 13.	삼성중공업, 삼성카드 지분 0.03% 삼성생명에게 양도
2014. 2. 4.	삼성전자와 에버랜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각각 3,010억원 출자
2014. 3. 31.	삼성 SDI와 제일모직 합병
2014. 4. 2.	삼성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의 합병
2014. 4. 22.	시간 외 대량매매를 통해 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SDS, 제일기획 등 비금융 계열사들이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일제히 매각
2015. 5. 9.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지분 100% 매입

하반기부터 증가한 지분정리 등의 사건을 두고 시장에서는 이재용으로의 상속 승계 작업이 본격화 되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였는데, 특징적인 것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었다. 종전에 삼성그룹이 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전환과정에서의 법률적인 어려움 등으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이러한 지분정리 작업 이후에는 삼성그룹이 금융부문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였다. 그리고 이재용이 에버랜드와 삼성 SDS를 ‘오랜기간’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인터뷰한 것을 뒤엎고, 1년 뒤인 2014년 5월 삼성 SDS의 상장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이재용으로의 본격적인 상속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상황에서 2014년 5월 10일 이견회가 쓰러졌다.

4. 삼성생명을 매개로 한 삼성전자 지배의 한계

삼성그룹은 기업집단 중 금융이 비금융을 지배하는 거의 유일한 그룹이다. 즉 삼성생명은 2015. 9.말 기준으로 25개 생보사 전체의 ‘주식 및 출자금’(특별계정 제외) 규모가 23.2조 원인데, 삼성생명이 그것의 78.0%인 18.1조 원을 차지할 정도로 주식 투자 비율이 높고, 대부분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 반면 삼성 다음의 2위의 금산복합 기업집단(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계열사로 보유한 그룹)인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생명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만 0.3조 원 보유한다.

이렇게 금융이 비금융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는 금융자본으로 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을 사금고화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동안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⁴⁾는 비난을 계속 받았다⁵⁾.

-
- 4) 구체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당 평균 취득 가격은 53,564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1980년 이전에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보은 돈으로 매입한 것이다. 유배당 보험상품이란, 보험사고에 대비한 위험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아서 자산운용을 하다가 그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상품을 말하고,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생보사들은 모두 유배당보험상품만 판매하였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때 그 차익을 어떻게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 5)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의 보유는, 장기간 매도하지 않은 채 보유만 하고 있다는 점, 분산투자 원칙을 외면한 채 특정 계열사 주식에 집중하여 취득한 점 때문에 ‘자산의 운용’이 아닌 ‘계열사의 지배’가 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길고도 질긴 법률적 논란에 휩싸였고, 삼성생명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위험이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였다.

(1) 공정거래법 11조6) 적용 논란

공정거래법에서는 원래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제11조). 이 조항은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 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서, 재벌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국민의 저축자금을 이용해 매입한 계열사 주식을 재벌총수가 계열사를 지배하는데 이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며,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다가 2002년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비금융상장회사의 주요안건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후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보다는 지배력유지 확장의 문제가 많아 2004년 의결권 행사비율 30%를 2006년 4월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15%까지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는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15%까지만 가능하다.

6)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나. 정관 변경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기 간	내 용
1986~2002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 원칙적으로 금지
2002~2004	비금융상장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30%까지 주요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가능
2004~현재	매년 의결권 한도를 5%씩 15%까지 축소하여 현재의 의결권 제한 한도는 15% 임

문제는 타 재벌보다 금융사가 많은 삼성그룹이 이 조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고, 위 조항은 삼성 특혜법 중의 하나로 비판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당초의 경제민주화법안에서는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가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11조는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개정 내용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전부 또는 일부의 의결권이 없어질 수 있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7) 위반 논란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 5%이상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려면 금융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93년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 금융사들이 기아자동차 주식을 매집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7)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용해서 기업지배력을 확장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IMF 당시 재벌 금융계 열사의 부실이 전체 그룹의 부실로 확산되는 경험을 겪으면서, 1997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11조와 별도로 주식 소유까지 규제하는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금산법 제24조 시행이후 이를 위반하는 회사의 경우 법 위반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거나 모두 자발적으로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였지만, 삼성그룹은 계속 버텼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하는 에버랜드 주식 25.6%와 삼성생명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이 문제되었지만, 전자의 대해서만 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후자의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 취득 분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고, 앞으로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언제든지 논란이 점화 될 수 있다.

(3)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위협

금융지주회사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따르면 자회사 지분 합계가 총자산의 50%를 넘으면 금융지주회사로 간주된다. 그런데 2004년 삼성전자 주가 급등으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출자한 19.34% 지분의 장부가격이 급등하면서 에버랜드의 총자산 중 삼성생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볼 경우 에버랜드는 법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었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에 대한 주식평가방법을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논란을 피해 나갔지만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게 되면 또다시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가 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다.

다만 이 위험은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으로 해결하였다. 왜냐하면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총자산이 증가하고 삼성생명 지분가치는 예전과 동일하므로 삼성생명 지분 가치가 삼성물산의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 의도한 또 다른 효과이다.

VI.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한 쟁점

1. 경영권 승계작업의 기본적인 시나리오

이재용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란, 공소사실에서의 개별 현안들만으로는 시기나 내용면에서 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작업에서의 고려요소들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경영권 승계작업을 가공의 틀이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장단점을 숙고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지주회로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자금동원 없이 지배력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고, 그 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의 주식보유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설령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일반지주회사를 통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삼성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다른 그룹처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복잡하고 장시간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겠지만,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는 여러 예측들이 있다.

결론부터 먼저 밝히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개별 작업들은 이러한 시나리오 중 하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독대한 2014년의 상황, 이후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논란이 되는 사건의 행태, 삼성그룹의 고유한 지배구조상 문제 등을 종합하면,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논란이 되는 사건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경영권 승계작업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로 인하여 먼 길을 돌아 가야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나와 있는 개별 작업들은 완결된 시나리오가 아니라 일부인 전반부만 추진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언론에서의 재판 방청기 등을 통하여 삼성이 근거로 제시한 것을 모아보면 아래와 같다.

2.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증가가 없다?

가. 이재용의 항변

설령 특검 주장의 ‘승계작업’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더라도,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나. 부당성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은 이재용의 의결권을 직접 늘리는 방법과 계열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다. 전자가 가장 좋은데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후자로 가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경영권 승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승계가 완성되어 무리한 추가 승계작업이 불필요하다?

가. 이재용의 항변

이재용은 에버랜드 지분을 통해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리하게 승계작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한편에서는 피고인 이재용이 이견희 회장을 아직 승계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소위 ‘승계작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피고인 이재용이 이미 이견희 회장을 승계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위에서, 미래전략실에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나. 부당성

회장의 부재 중에 2인자의 지위에서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경영권 승계는 완성되지 않은 ‘유동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설령 현재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약 8조 원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모친과 이부진, 이서현에게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삼성의 고유한 문제, 즉 삼성생명을 매개로 한 삼성전자 지배의 종전의 법률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아래와 같이 보험업법문제와 금융그룹통합감독문제가 새로이 추가 되어 삼성생명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할 위험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여전히 필요하다. 더구나 이견회가 수년째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승계작업을 외면하거나 느긋하게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

(1) 보험업법문제

보험업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삼성생명의 경우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약 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따라 제한이 되는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가치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2.2조 원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장부가액(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7조 원으로 법 위반 상태이다.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보험업법에서는 자산평가 방법의 기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⁸⁾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감독규정은 은행, 상호저축은행, 집합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업의 경우와 다르다. 보험업을 제외한 은행,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대주주등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제한하는 경우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장부가액(공정가치)’을 기준으로 비율을 규제하고 있어서, 현재의 보험업감독규정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개정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례적인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이를 바로잡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 자체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8) 별표 11(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 : 주식 및 채권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은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일정 부분 매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금융그룹 통합감독문제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그룹 리스크가 우려되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감독이 아니라 금융계열사 전체를 통합하여 감독하는 것으로서, 해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에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보류되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적정성 평가를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그룹 단위에서 한다는 것이다. 즉, 삼성생명이라는 단일한 기업만 가지고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을 한꺼번에 묶어 감독한다는 말이다. ‘자본적정성’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자본’(eligible capital; 실제 보유한 자본에서 위험 완충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제항목을 차감한 것)이 ‘필요자본’(required capital; 보유 자산의 위험을 완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계열사 출자분의 경우 현행 감독 시스템 아래에선 각각의 출자분이 모두 적격자본이지만 통합감독 시스템 아래서는 그룹 내 출자분은 일정부분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 결과 삼성의 경우 현재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적격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통합감독 시스템에선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자본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일정 정도 매각해야 할 위험에도 빠진다.

4. 삼성생명에 대해 충분히 지분이 있는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할 이유가 없다?

가. 이재용의 항변

이미 삼성생명은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도 이견희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 모두 52%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지분으로 삼는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의결권이 70%대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더 높이기 위해 삼성이 일련의 복잡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나. 부당성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전제를 잘못 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삼성생명에 대한 의결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더구나 삼성생명의 보유지분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잘못되었고, 오히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주회사로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이재용은 삼성 SDS 나 삼성물산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8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다른 재원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을 내지 않고 재원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현물출자 실시하여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공소장과 같이 금융지주사가 설립되었다면, 이건희 회장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은 추가 자본 투입 없이 20.76%에서 45.78%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어 늘어난 지분을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이재용의 승계작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를 청탁할 이유가 없다?

가. 이재용의 항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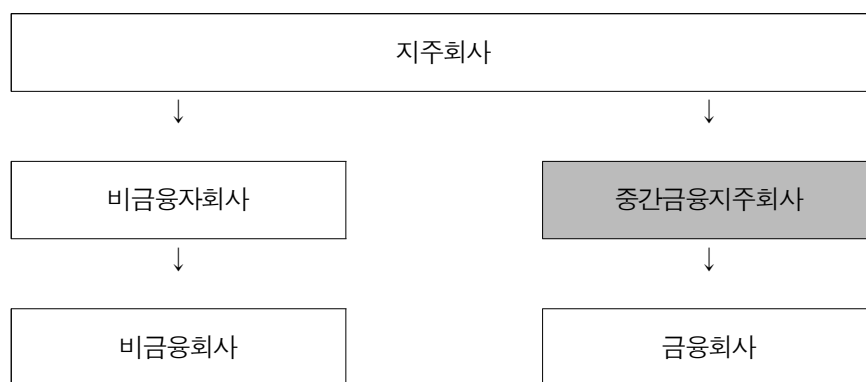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의 종착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이다. 그런데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는 그 개념상 반드시 사업지주회사⁹⁾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만, 삼성은 사업지주회사를 추진하지 않았고 특검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승계작업’ 과정에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중간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

나. 부당성

9)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인용한 문구인데, 사업지주회사가 아니라 일반지주회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이유에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회사를 동시에 보유한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꺼려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금융계열사들을 중간에 지주회사형태로 보유한다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동시에 계열사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해당 금융회사를 중간금융지주회사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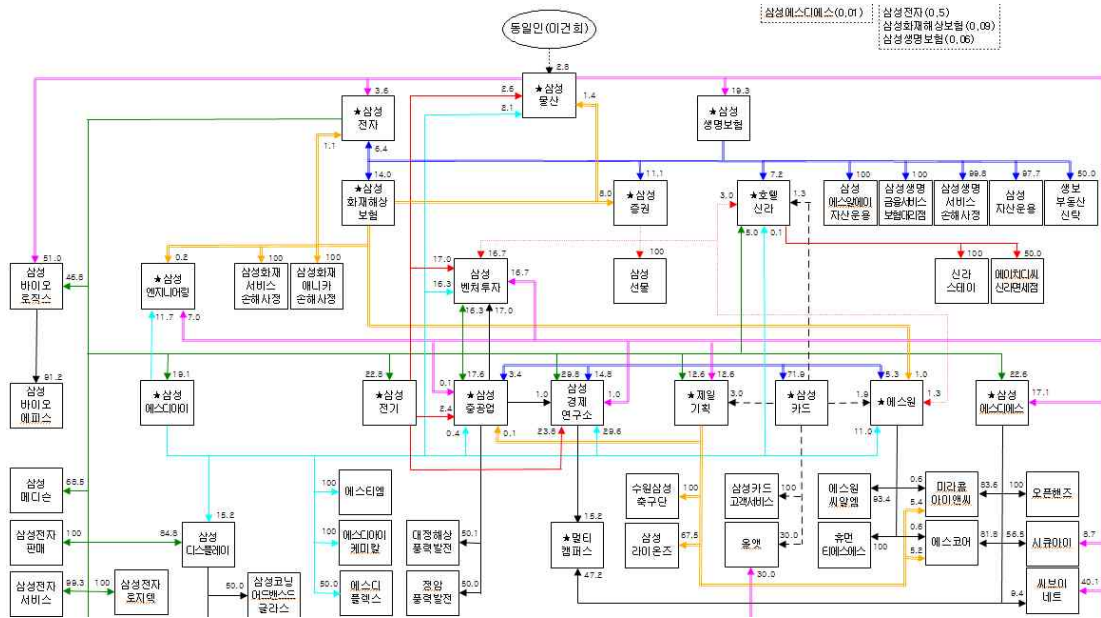


이재용의 주장은, 삼성그룹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있지만, 일반지주회사를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에 반한다. 즉, 삼성의 주장대로하면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들이 혼합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금융계열사들만큼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정리하려고 했지만, 비금융계열사들은 여전히 복잡한 상태로 놓아둔다는 것인데, 상식에 반하는 설명이다. 당연히 금융계열사들은 금융계열사대로 금융지주회사를 매개로 묶고, 비금융계열사들은 비금융계열사들대로 일반지주회사를 매개로 묶어두는 구조를 취하려고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를 우선 설립하고 삼성전자 중심의 일반지주 설립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돼 중간금융 허용되면, 이 두개 지주회사를 수직 연결하는 최종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간명한 지배구조가 된다.

10) 제8조의 2 ②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2016. 4. 1. 기준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따라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들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 있었다면, 비금융계열사들에 대해서도 일반지주회사 형태를 고민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다만 일반지주회사를 당장 추진할 계획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이에 관련한 자료가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중간금융지주회사가 있으면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이 간명해지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단지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 두 개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원하는 정도에서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은 경영권승계와 무관하다?

가. 이재용의 항변

삼성 SDS와 에버랜드의 상장은 사업구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신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향후 자본확충을 대비한다는 개별기업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나. 부당성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려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삼성 SDS는 구주매출방식을 이용하였다. 에버랜드는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였지만, 당시 재무상황이 나쁜 상태가 아니어서 시급히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보다 이재용의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 그 중 특히 에버랜드는 향후 있을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인다.

7.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권승계와 무관하다?

가. 이재용의 항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서 합병 후 이재용의 지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나. 부당성

이미 이 부분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형사 판결문에 배경사실로 적시하였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위 판결문에는 “이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성그룹 지배 구조 개편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하였다.

8.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새로 도입될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회사 재무의 안전성이나 경영의 건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과는 무관하다?

가. 이재용의 항변

2015년 2월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¹¹⁾에 대한 논

11) IFRS 4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만든 국제회계기준(IFRS) 중 보험계약에 대한 것이다. 2021년부터 2단계 기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2단계 기준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의 부채평가 기준을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산의 경우 시가로 표시했으나 부채는 원가로 표시해 장부상 자본이 과대 또는

의가 가시화되었는데,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의 자본금이 44조 원가량 줄어든다. 또한 기존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부채(고객에게 보험금을 환급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해 놓는 책임준비금)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고금리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의 경우 '부채 폭탄'을 방어하는데 약 2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에서 유일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이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생명은 다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의 잉여자금에 대해서도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 또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외부 차입금을 유치해 이를 토대로 삼성생명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나. 부당성

우선 공판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담당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새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과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증언하였다.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금 3조원을 사업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로 이전하려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지주회사가 다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수단으로 외부 차입금을 유치해 이를 토대로 삼성생명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의미를 따져 보아야 한다. 즉 삼성생명의 지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일정액의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이견희 본인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분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금이나 차입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견희는 추가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과소평가될 위험성이 존재했는데,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결국 삼성생명이 자금확충 방법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이면에는 이 건희 등의 지분희석화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9. 청탁이 있었다면 왜 무산되었는가?

가. 이재용의 항변

단독 면담 직후 개별 현안들이 삼성의 의사와는 달리 무산된 사례들까지 있다는 점 역시 뇌물수수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과 절대 양립될 수 없다. 예를 들어 2014. 9. 15. 1차 단독 면담 직후에는, 공소장에 승계작업을 위한 현안으로 적시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5. 7. 25. 2차 단독 면담 후인 2015. 10. 14.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까지 받아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처분결정이 이루어졌다. 2016. 2. 15. 3차 단독 면담 직후에는 안종범 수첩에 ‘금융지주회사’라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여 바로 그 다음날 삼성에 불가통지를 하였고, 결국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중단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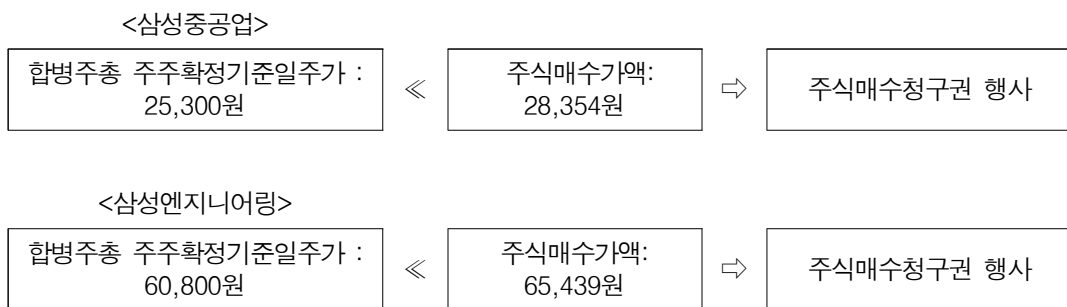
나. 부당성

(1)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무산

우선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무산은 합병 결의 이사회 이후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됨에 따른 것이어서 설령 아무리 대통령과 재벌총수간의 뇌물수수 합의가 있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의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일(2014. 9. 1.) 당시 주가는 27,250원이었는데, 이후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합병주총 주주확정기준일(2014. 9. 22.) 당시 주가는 25,300원이었다. 반면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가액은 28,354원이었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시장에서 25,750원에 팔리는 주식을 회사가 28,354원에 사겠다고 하니 주식매수청구권을 많이 신청했고(국민연금은 기권) 결국 합병이 무산되었다.

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여서 합병 이사회결의일(2014. 9. 1.) 당시 주가는 63,900원이었는데, 이후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합병주총 주주확정기준일(2014. 9. 22.) 당시 주가는 60,800원이었다. 반면 회사가 제시한 주식매수가액은 65,439원이었기 때문에 주주로서는 시장에서 60,800원에 팔리는 주식을 회사가 65,439원에 사겠다고 하니 주식매수청구권을 많이 신청했고(국민연금은행권) 결국 합병이 무산되었다.



(2)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처분결정과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중단

둘 다 실무담당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도 삼성이 아랑곳 하지 않고 강행한 점을 오히려 주목해야 하고,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위원장 결재까지 마친 ‘삼성물산 처분 주식수’ 결정이 반복돼 12월 삼성 측에 유리한 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10. 금융지주회사 전환과정과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가. 이재용의 항변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과정인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과 바로 그 다음 과정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과정”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즉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들이 형성되는데, 한편으로는 순환출자고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탁하였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순환출자고리가 형성되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어서 두 개 작업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 부당성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이다. 똑같은 논리라면 삼성은 한편으로는 합병시 순환출자고리 형성에 대한 공정거래법 개정조항이 맞다는 전제하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들이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정거래법 개정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공정위 관계자와의 접촉은 허용되는 기업활동의 범위 내라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삼성의 주장 또한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기업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따라서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건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건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의 작업이 끝나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연결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11. 순환출자해소를 위해 공정위 로비가 꼭 필요했는가?

가. 이재용의 항변

설령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하더라도 겨우 2.6% 차이에 불과하여 삼성물산에 대한 경영권 유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청탁할 이유가 없다.

나. 부당성

이재용은 겨우 2.6%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재용은 자신의 자금 2000억 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한 3000억 원, 총 5,000억 원을 들여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였다. 특히 2015년 5월15일 이재용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되면서 “재단을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생각도, 재단이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으나, 불과 9개월 뒤인 2016년 2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3000억 원 규모의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며 스스로 공언했던 내용을 뒤집기도 했다. 이는 그만큼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주식의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V. 경영권 승계작업 이외의 쟁점

경영권 승계작업 이외의 쟁점들은 독대 전에 정유라를 인지했는가와 같은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이어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보다는 증거관계,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청와대의 말씀 참고자료,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폰 메시지를 중심으로 충실히 따져보면 될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사인 등 여러 언론에서 잘 정리하여 보도하였기 때문에 간략히 살펴보기만 한다.

1. 이재용-최지성 분리전략

가. 이재용의 항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요구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에게 전달했을 뿐, 나머지는 몰랐다.

나. 부당성

최 전 실장 등에 전달만 하고 챙기지 않았다는 상식에 반한다. 법률적으로도 재벌 회장 사건에서 통상 나오는 항변이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는 것인데, 법원은 경영권 유지와 같이 그 행위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재벌 회장인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한다. 정몽구 회장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정몽구는 그러한 행위를 지시 또는 승인 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대강관의 유상증자가 피고인 정몽구의 현대강관에 대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 있었다면 유상증자의 이익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피고인 정몽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법 2007.9.6. 선고 2007노586 판결).

2. 정유라를 인지하지 못했다?

가. 이재용의 항변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와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2차 독대 이전까지 몰랐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의 단독 면담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언급하지 않았고, 올림픽 유망주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했는데, 최순실이 그 기회에 편승하여 정유라를 포함시켜 지원해 줄 것을 강요 내지 공갈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아니다.

나. 부당성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올림픽 승마지원이라고 하면, 삼성이 왜 올림픽 유망주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지 않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3.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가. 이재용의 항변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청탁이, 어떤 방식으로 오고갔는지 전혀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다.

1차 단독 면담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의 기회에, 사전 예고도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그것도 불과 5분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이재용이 특검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대한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대통령에게 청탁하면서, 이와 같이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우연한 만남에서, 그것도 바깥에서는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일행들이 테이프컷팅을 위해 기다리고 상황에서, 불과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해치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나. 부당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포괄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참고한 말씀자료,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도 증빙이 되었다고 보인다.

4. 소위 ‘말세탁’ 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가. 이재용의 항변

승마협회 회장사로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말을 구입했는데, 정 선수 측으로부터 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연락이 와서 말을 쓸 수 있게 한 것이고, 말의 소유주자는 삼성이고, 삼성 자산을 단지 임대해줬을 뿐이다. 그러나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8월에 다시 팔아 말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서, 말을 단지 임대한 것만으로는 최순실에 대해 부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부정한 수단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도 아니다.

나. 부당성

삼성과 최순실을 연결하는 핵심고리가 정유라의 승마지원이고, 극명하게 대립한 부분은 지원된 말의 소유권이였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말을 지원하면서 소유권까지 넘겼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판 초기에는 이 부분이 많이 다투어졌다. 이에 대해 삼성은 공판도중 마필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최순실 측에 한 번도 말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유라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로부터 “엄마가 ‘살시도를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라는 말을 들어 “삼성이랑 얘기 잘 해서 그 말을 소유하는 걸로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은 이재용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VI. 마치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헤어짐을 앞둔 연인사이거나 있을 법한 이 말을 삼성에게 건네고 싶다. 청년들의 꿈의 기업, 세계 굴지의 기업인 삼성이 2007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지 10년 만에 또 다시 특검을 통해 재판에 놓여졌다. 일련의 사건의 근원은 ‘총수일가의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그룹지배’라는 기형적이고 복잡한 그룹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를 낳은 것은 어떻게든 적은 돈으로 혹은 개인 돈을 쓰지 않고, 순환출자구조라는 편법을 통해서라도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욕심이 작용했을 게다. 또 하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수의 상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속세, 상속재산 분배 문제를 회피하고 상속인이 피상

속인의 지배력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욕심을 내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욕심들이 이러한 불법과 국정농단, 파국을 불러일으켰을 터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공은 있지만,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함에 있어 자신의 돈을 들이는 대신 계열사의 자금을, 특히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이용하는 그릇된 방안을 사용함으로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정적인 과오를 범했다. 단순히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었다고 보기에는, 보험가입자들은 이건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이건희 역시 그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도 없다. 결정적으로 금산분리라는 국가의 대경제정책에 위배된다. 그렇게 시작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이제 삼성특혜법이 없다면, 그리고 삼성에 우호적인 권력이 없다면 금방이라도 쓰러져버릴 사상누각이 되어 버렸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이라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자필 메모가 이를 방증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의 재산은 탐이 났지만 상속세를 감당할 여력은 없었나보다. 법대로라면 5조가 필요했던 것을 1/100 정도만 지불하고 패스하려는 무리수를 두었다. 그것은 결국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 그 과오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건희 회장은 탈법과 불법을 매개로 세운 삼성왕국에서 왕의 아집으로 버티려고 하였다. 정치계, 언론계, 학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로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했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연구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언론을 이용, 법마저 바꾸어가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기를 거부했다. 이재용 역시 이번 재판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태도를 계속 견지하면서 진술을 반복해왔다. 처음에는 박근혜의 강요에 못 이겨 지원한 것이라고 했다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급기야 자신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연 이재용이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삼성그룹을 차기 총수로서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재용은 마지막까지 특검이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있지도 않은 허구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용은 이건희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필요한 법정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고, 반도체 회로처럼 얽힌 지배구조 내에서 장래에 충분히 예견되는 리스크를 고려한 지분을 하락의 위험을 방지해야 하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고질적인 삼성그룹만의 취약한 지배구조의 문제도 안정시켜야 한다. 안타깝게도 경영권 안정적인 승계란 이재용의 주장처럼 단순히 현시점에 얼마의 지

분을 가지고 있느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구조개편과 승계작업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의미 역시 바로 이런 맥락일진대, 현재 지분만으로도 이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경영권 승계 작업이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현혹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다. 여전히 삼성에게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은, 그리고 이재용은 이번 사건이 단지 그룹의 지배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한 편법이 돌발변수로 인해 문제된 사안 정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53회에 이르는 공판기일동안 보여 준 삼성의 모습은 결코 삼성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들이 자신의 돈 대신 국민들의 돈을 이용해 손쉽게 그룹을 지배하려고 했던 탐욕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만일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집단들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외부의 힘으로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의 탐욕과 적폐를 청산하여 변화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이재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룹의 과오를 바로잡아 삼성그룹을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공판의 쟁점과 교훈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I.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

1. 뇌물공여죄

가. 이재용 피고인이 당면한 현안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추진, 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등 10가지의 현안이 있었고, 이러한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현안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받으려 했음.

나. 최순실과 박근혜의 뇌물수수의 공모

1) 정유라 승마지원에 대한 공모

가) 2014. 9.경 최순실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한화그룹이 정유라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으로 바꾸어 정유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은 이를 수락.

- 나) 2016. 12. 대통령은 수석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이재용 및 박상진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정유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2016. 2. 경 최순실로부터 피고인 이재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

2)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출연에 대한 공모

- 가) 최순실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전달받은 후 대통령에게 영재센터가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
- 나) 최순실은 2016. 2. 14.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2015. 2. 15.자 단독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영재센터 사업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

3)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출연에 대한 공모

- 가) 최순실은 2015. 5.경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자신들이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한 후 000 수석 등에게 지시하여 문화와 체육 두 개 재단법인의 초기출연금 규모는 각각 300억 원 수준으로 출범하며, 삼성 등 대통령이 지정한 10개 그룹에서 하나의 재단법인에 30억 원 씩 출연하여 설립자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7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면담을 준비하도록 000수석에게 지시함.
- 나) 그 이후 재단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던 중 최순실은 2015. 10. 경 중국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핑계 삼아 000비서관을 통

해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문화재단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통령은 “재단 설립이 왜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재촉함.

다. 형법 제129조의 단순뇌물죄 : 최순실과 정유라의 승마지원

- 1) 2014. 9. 5.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과의 독대자리에서 피고인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삼성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 및 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승마지원 요구를 수락

- 2) 2015. 7. 25.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과의 독대자리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지원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 승마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도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삼성이 그걸 안하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는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제일기획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원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사례를 하고, 승계작업에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요구를 수락.

- 3) 2016. 2. 15. 대통령은 소위 ‘안가’에서의 이재용과의 독대자리에서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인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

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물산 주식 처분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종전 결정을 번복하고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해 준 점에 대하여 사례를 한 후,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사전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바이오 신산업 분야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관련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부탁을 함.

- 4) 위와 같은 뇌물수수의 합의에 따라 삼성 측은 최순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최순실의 독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코어스포츠와 운영비, 말 차량 구입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용역대금 명목으로 36억 3,484만원을 지급하고,

형식상 삼성이 말을 구입하여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살시도 등 고가의 말 구입대금 합계 금41억 6,251만원을 최순실 대신 마주 등에게 지급.

라. 형법 제132조의 제3자뇌물죄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 1) 2015. 7. 25. 안가 독대자리에서 대통령은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 제일기획 000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자신의 승계작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 요구를 승낙.

- 2) 2016. 2. 15. 안가 독대자리에서 대통령은 “영재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최순실로부터 건네받은 사업계획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자신의 승계작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

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 요구를 승낙.

- 3) 2015. 7. 15. 뇌물수수의 합의에 따라 2015. 8. 9. 000수석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삼성전자 자금 5억 5,000만원을 영재센터 계좌에 송금하고

2016. 2. 15. 뇌물수수의 합의에 따라 삼성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원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에 송금.

마. 형법 제132조의 제3자 뇌물죄 :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출연 지원

- 1) 2015. 7. 25. 안가 독대자리에서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임기 내에 피고인 이재용이 희망하는 방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말하며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자신의 승계작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 요구를 승낙.

- 2) 2016. 2. 15. 안가 독대자리에서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에게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에 협조해 주서 고맙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포함하여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하여 케이스포츠 재단에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이재용은 자신의 승계작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통령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 요구를 승낙.

- 3) 위와 같은 뇌물수수의 합의에 따라

- 가) 삼성은 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재단 임원진들은 발기인으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이 아님에도 허위로 창립총회 회의록이 작성되는 등 삼성그룹이 재단의 인사 및 운영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전혀 갖지 못하였고 향후 운영과정에 관여할 의사도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 나) 2015. 10. 25. 전경련 전무 000로부터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계열사별로 출연금을 임의로 할당하여 삼성전자 60억 원, 삼성화재 25억 원, 삼성물산 15억 원, 삼성생명 25억 원 등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미르 재단에 송금.
- 다) 2016. 2. 경 전경련 000전무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총 300억 원 중 79억 원을 삼성그룹에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계열사별로 임의로 할당하여 2016. 26. 삼성생명 10억 원 등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

2. 업무상횡령

1.의 뇌물제공을 위해 개인자금이 아니라

- 가. “1의 다.”의 뇌물에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소유의 합계 77억 9,735만 원을,
- 나. “1의 라.마.”의 뇌물에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 소유의 합계 금220억 2,800만원을 횡령한 사실

3. 재산국외도피

- 가. “1.의 다.” 단순뇌물죄 관련하여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 컴퍼니 코어스포츠에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외화 증여”에 따른 지급신고 및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코어스포츠의 ‘컨설팅서비스’를 지급사유로 하는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외국환은행은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외화를 송금하거나,

- 나. 실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이 독일 해외 전지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말 및 차량구입 용도인 것처럼 ‘허위 예금 거래신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외화를 독일 KEB하나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등
- 다. 합계 78억 9,430만원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법령(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용하여 도피시킨 사실.

4. 범죄수익은닉

가.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계열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공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재하지도 않는 삼성전자 소속 승마단을 위한 해외 전지훈련 비용과 훈련에 필요한 말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가 보유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이재용과 최순실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나.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2016. 8. 22. 경 언론에서 “삼성에서 정유라에게 고가의 말을 사주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독일 현지 취재가 진행되자,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말리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말들을 다른 말로 교체하되 마치 정유라가 아닌 삼성전자가 위 말들을 소유하다가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정유라는 삼성전자와 전혀 무관한 말들을 소유하고 이는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인 이재용과 최순실이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

5. 국회에서의 위증

II.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1. 업무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 등의 범죄행위는 앞의 뇌물공여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바로 범죄성립이 될 것으로 전망.

2. 단순뇌물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가.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금전적 이익이 수수된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뇌물의 수수가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있어 함.

그러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 성부의 판단에 있어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뇌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임(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 1911).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개인이나 뇌물을 제공한 증뢰자 개인의 비리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뇌물죄 성립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님.

나. 뇌물공여죄 중 단순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입증부담이 낮음. 위와 같은 뇌물죄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보호라는 뇌물죄의 입법취지상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는 없음(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다. 대통령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적용되어 더욱이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나 직무행위가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음.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는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뢰 사

건¹²⁾에서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정립한 바 있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음.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음.

라.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던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도 앞서 본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서, 직무의 범위는 특정될 필요가 없고, 대가관계 역시 구체적일 필요가 없으며,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수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부패가 근절되

12) 전두환에 대한 추정가액은 2,205억 원, 노태우에 대한 추정가액은 2,629억원입니다.

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회의원에게도 위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3.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법리적 쟁점

가. 제3자 뇌물죄 사안을 단순뇌물죄 사안처럼 수사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무죄가 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소위 “신00” 사건이라고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나. 제3자 뇌물죄는 단순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이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함.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됨(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다.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음.

재벌그룹들이 정부에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원샷법 등 재벌기업에 유리한 법제도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정책적인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직무집행을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금원을 출연하겠다고 연결시키는 등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할 수 있음.

라.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는 위 공소장이 기재내용과 같이 3차례에 걸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포괄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들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어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입증, 특히 안중범 업무수첩이나 대통령 말씀자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 등의 물증에 기재된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유죄 여부를 판단할 전망.

4.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범관계

가.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 뇌물을 수뢰하는 사안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뇌물의 공여가 간접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뢰가 되는 간접수뢰(間接受賂) 사안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뇌물죄가 됨.

예를 들어, 공무원(박근혜)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이재용)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최순실)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최순실)이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다른 사람(최순실)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최순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최순실)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박근혜)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최순실)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박근혜)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가 성립(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나.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의의 관계를 가족이나 동거친족과 같은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볼 수 있어 이러한 경제적 공동체관계에서 공범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도 관저에서 최서원과 사적 만남을 꾸준히 지속하였다. 최서원은 정0성을 비롯한 피청구인의 일부 보좌관과 차명 휴대전화 등으로 상시 연락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피청구인의 일부 보좌진은 최서원을 피청구인 관저에 청와대 공무차량으로 출입시켜 신분확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사적으로 만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음.

다. 특검의 공소장에서는 최순실과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뇌물수수를 공모하는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어, 결국 이러한 구체적 공모의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문제에서 공범관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라. 최순실이 박근혜 전대통령과의 공범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결국 최순실을 제3자로 보아,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

특검이 이렇게 피고인 이재용이 최순실에게 78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행위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단순뇌물죄를 적용한 이유는 최순실이 삼성의 뇌물수수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승마지원의 프로그램이나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등의 설립계획 등 뇌물을 제공받으려는 계획을 제안하는 등 뇌물수수의 범죄행위에 구체적으로 공모하고 뇌물도 “1. 1.의 다.” 단순뇌물죄에 있어서는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실행행위를 삼성 측과 논의하는 등 범죄실행의 기능적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던 것임.

III. 주장과 증거자료를 둘러싼 쟁점들

1. 경영권 승계의 플랜은 가상의 프로그램인가?

- 가. 경영권 승계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발제에서 실제로 경영권 승계작업 플랜에 따라 치밀하게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 볼 것이나
- 나. 삼성 측의 주장처럼 경영권 승계작업 플랜이 존재했느냐 여부에 따라 뇌물공여죄의 유·무죄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다. 현안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다면 뇌물공여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현안의 청탁이 경영권 승계작업의 플랜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 여부는 죄질, 즉 양형을 따질 때 의미가 있는 것임.

2. 다른 뇌물공여 사건과 증거관계에서 이 사건의 차이점

- 가. 뇌물수수 사실은 다툼이 없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뇌물수수 사건에서와 같이 뇌물수수 사건의 법정공방의 핵심은 뇌물인 금전이 수수되었느냐 여부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금전이 수수된 사실은 다툼이 없음.
- 나. 뇌물수수 사건은 많은 부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는 재판인데, 이 사건은 진술증거 외에도 안종범 수첩, 청와대 말씀자료, 청와대 삼성의 경영상황 보고문건,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서 등 많은 물증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다. 증거능력과 증거력

- 1) 민사재판은 그 증거를 법원이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자격이 있느냐를 심사하는 증거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형사재판은 징역을 살게 하는 등 해당 피고인의 자유권을 크게 제약을 가하는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어서 먼저 그 증거가 법원이 보고 판단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자격이 있느냐의

증거능력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전문증거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음.

- 2) 또한 증거에는 뇌물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거나 뇌물을 전달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직접증거도 있지만, 뇌물수수의 범죄를 추단하게 하는 여러 간접증거(정황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음.
- 3) 간접증거(정황증거)는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져 그러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한방(?)이 되지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뇌물죄와 같이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에 있어 뇌물수수를 직접 촬영하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 등의 직접증거는 대부분의 뇌물사건에서 존재하지 않고,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뇌물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임.

라. 뇌물공여죄의 뇌물수수의 합의가 있었다는 3차례의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의 독대자리에서 오고 간 부정한 청탁이나 대통령의 승마지원, 재단 출연금 등 뇌물 제공의 요구 등에 관한 유력한 증거인 안종범 수첩이나 대통령 말씀자료 등은 간접증거에 불과하여 그러한 간접증거만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업무일지와 같이 작성자의 기재여부나 기재내용의 가감(加減)에 관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업무의 필요상 일상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의 증거력(신빙성)은 오히려 높다고 할 수 있음.

3. 진술증거의 경우 많은 수사기관의 진술이 재판에서 많이 반복되었다는 점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반복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인천교육감 뇌물사건에서 제1심에서 뇌물수수의 실행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교육감이 뇌물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진 빚을 정산한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심에서는 제1심에서의 진술을 반복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함.

4.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제공의 진행은 미래전략실 실장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주장의 인정여부

그러나 1) 청와대 대통령 독대에서는 삼성그룹을 대표하여 대통령과 직접 독대한 점, 2) 국회 청문회에서는 본인이 직접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한 점, 3) 여러 계열사 소유의 자금을 동원하여 뇌물을 제공한 점 4)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점 등 여러 사실관계는 이재용 피고인이 최순실에 대한 승마지원 등의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IV.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의 문제

1. 각 죄의 법정형과 법원이 형량을 정할 수 있는 범위

가. 법정형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횡령) 중 50억 이상의 범죄는 5년 이상의 징역, 제4조(재산 국외도피)는 10년 이상, 무기,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죄이다.

나. 경합관계의 가중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형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데, 이재용 피고인에 적용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형의 범죄는 “재산 국외도피”죄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재산 국외도피”죄가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가중 없이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임.

다. 법원의 작량감경

법원의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므로 “재산 국외도피”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최대한 선처하여 형을 감경하더라도 5년 미만의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음(참고로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징역형의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임).

2. 왜 다른 재벌총수들에 대한 범죄와 달리 구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은가?

지금까지의 재벌총수에 대하여 적용된 범죄의 구형량에 비하여 구형량이 높은 이유는 법정형의 최하한이 10년 이상인 “재산 국외도피”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 이재용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특검이 법정형 최저형량 이하로 구형을 할 수는 없을 것임.

3. 정경유착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나에 따라 형량도 큰 차이가 날 수도

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 내지 공갈(?)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것이라면 뇌물공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나,

나. 그러한 경우에도 박근혜 전대통령의 강압으로 자금지원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당면한 현안도 청탁하게 된 것이라면,

뇌물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것임. 다만, 법원이 뇌물공여의 상황을 이렇게 판단한다면 양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박전대통령은 퇴임 후의 활동을 위해서는 그 동안 자신의 재산이나 생활을 관리해 준 최순실의 도움이 필요했고, 최순실이 제안하여 설립되는 미르나 케이스포

트 재단 등도 자신의 퇴임 후 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자금력이 풍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려 하였는데, 삼성이 이러한 청와대의 사정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경영권이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권 정지 작업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라면

삼성 측이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면서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얻어낼 한 것이어서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될 것이므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라. 경영권 승계 플랜을 치밀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삼성이 주도적으로 청와대에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자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사안들을 청탁해 온 것이라면 형량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임.

SK 그룹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2016. 2. 29. 펜싱 등 케이스포츠 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지원 명목으로 89억 원을 비텍스포츠(코어스포츠의 명칭변경)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법령위반 등의 소지가 있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바 있어, 삼성그룹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 바 있음. 대통령의 위법한 요구라고 판단하였지만, 강박으로 느껴 어쩔 수 없이 출연한 것이라는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임.

4. 양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특검이 양형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유들은 1)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범죄 실행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될 것에 대하여 허위 용역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한 점, 2) 대통령과의 독대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하면,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범행이 진행된 점, 3)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자신들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 마다 주장을 바꾸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

과 독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제공의 진행은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는 등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5) 뇌물공여에 제공한 자금이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임.

이러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 외에도 아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재판이 망국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등 유린된 헌정질서의 회복, 재벌그룹이 보여주는 사법질서 경시풍조의 근절 등 우리 사회의 정상화에 필요한 여러 공익적 필요성도 양형의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

V.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뇌물수수죄(수뢰죄)와 뇌물공여(증뢰죄)는 수뢰자와 증뢰자의 협동을 필요로 하므로 양 죄는 1개의 범죄의 양면이며, 범인의 신분에 의하여 형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규정한 필요한 공범임(대법원 1987년 12월 22일 선고 87도1699 판결)
2. 이 사건의 공소장은 3차례의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큰 틀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뇌물제공의 이행이 실행되었다는 틀도 되어 있는데, 이재용 피고인의 뇌물공여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뇌물수수죄(수뢰죄) 범죄의 성립도 인정될 개연성이 높음.
3. 뇌물수수(수뢰죄)와 뇌물공여(증뢰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무원인 수뢰자의 형이 훨씬 높게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제1항 제1호.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

VI. 범죄수익의 환수문제

1. 이재용 피고인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의 문제

가. 업무상 횡령죄는 재산적 이익에 관한 범죄로 그 범죄수익의 환수, 즉 추징을 법원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범죄임.

나. 이 사건에서 이재용 피고인이 삼성전자 등 피해자 계열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여 뇌물로 제공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그 횡령액에 대하여 이재용 피고인에게 그 횡령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음.

다. 한편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삼성전자 등 피해 계열사의 주주들은 이재용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액 상당액의 회사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있는데, 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 포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

피고인 이재용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음. 또한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다. 이처럼 피의자 이재용이 이 사건 합병으로 취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뇌물공여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하는 것임.

마. 부당한 합병비율을 적용한 결과, 적정한 합병비율로 평가되고 있는 1:1의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 비해, 이재용 등 총수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재상장일

인 2015. 9.15. 현재 시가총액 30.9조 원×부당하게 획득한 지분을 차이 10.12% = 3조 1,271억 원)을 가져간 것임. 이재용 일가가 범죄로 획득한 금액의 대부분은 피합병법인인 (구)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부담했으며, 그 중 국민연금의 손해액만도 5,178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됨. 3조 1,271억 원의 범죄수익은 결국 국민연금을 비롯한 (구)삼성물산의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빼앗아간 결과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피의자 이재용 등이 뇌물공여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3조 1,271억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¹³⁾.

2. 최순실의 범죄수익 환수문제

- 가. 뇌물수수죄는 법원이 반드시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하는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는 범죄임
- 나. 뇌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추징은 뇌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뇌물을 수뢰자가 보유하였다가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에는 증뢰자에게 추징해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예를 들어, 롯데그룹의 경우에는 70억의 뇌물을 제공하였다가 그 뒤 롯데가 검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돌려받았는데 이 경우 롯데그룹 총수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추징은 롯데그룹 총수에게 부과되게 될 것임.
- 다.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수수한 범죄수익 중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명목으로 수수된 금액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최순실에게 추징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검은 이미 예상되는 추징액을 사전동결 조치를 한 바 있음.
- 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는 경우 전두환, 노태우 뇌물수수사건의 경우처럼 그 뇌물수수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대통령은 뇌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최순실 외에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뇌물죄의 유죄판결과 함께 추징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13) 참여연대, “국민연금을 돈으로 산 이재용의 뇌물죄 범죄수익 환수 촉구 의견서” 2016. 12. 29.

보임.

3.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범죄수익의 환수문제

- 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출연된 출연금도 뇌물죄가 성립된다면 범죄수익이 되므로 이를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음.
- 나. 그러나 한국은 형사재판과 독립적으로 범죄수익만을 따로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이 없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뇌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때만 부가적 조치로서 몰수, 추징 제도를 통해서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음.
- 다.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경우 따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므로 부가적 형벌인 추징을 통해 그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는 없음.
- 라.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9조 단서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몰수대상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대표자 등이 뇌물수수로 출연되는 금원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출연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음.

Ⅶ. 삼성그룹 실질적 총수의 형사재판이 주는 교훈

1.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의 기본질서의 훼손

재벌들과 최순실 등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여 국가의 경제정책, 공정거래정책, 금융정책,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좌지우지 하려고 함으로써 국가의 운영이 국민의 민주적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국민주권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은 두 손바닥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손뼉과도 같은데, 국가 권력을 사유물로 삼아 돈을 받고 처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적이고 부패한 정치세력이 한쪽 손바닥이라면, 다른 쪽 손바닥은 ‘폰돈을 들이더라도 큰돈을 벌어보자’는 식의 재벌대기업들의 욕심임. 깜짝 놀랄만한 스토리의 권력형 비리도 문제지만,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묻어 피해자인 양하는 거대 경제권력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임. 권력형 비리의 이면에는 친재벌정책 등 경제적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뇌물을 제공해온 거대 경제권력이라는 토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 두 손바닥이 다시는 부딪치지 못하게 하는 것, 국가권력이 돈에 의해 팔려다니는 이 불행한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함¹⁴⁾.

2. 경제민주화의 헌법원리 훼손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의 이념을 위반하여 재벌에 유리한 국가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경유착의 고리가 이어져온 사실을 보여줌. 정경유착(政經癒着)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특정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과 탈세, 부정부패, 법과 정의의 실종 등을 낳아 그 자체로 망국적인 것임. 특정 재벌들이 요구하는 경제정책이 때로는 노동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발전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위반하거나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가치와 배치되기도 함. 공론의 장에서 공개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채택되어야 할 경제정책이 정경유착의 음습한 통로를 통해 채택된다면 그로 인한 경제의 왜곡과 법과 정의의 실종은 뒤로 하더라도 국가정책의 신뢰 자체가 상실되어 국가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불신이 확산됨.

3. 재벌들이 국가의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의식 결여

최고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통해서라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벌총수나 재벌그룹의 현안에 유리한 정책이나 행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뇌물공여의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 처음부터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노출되면서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14) 민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민변의 의견서” 2016. 10. 27.

작성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하려는 행위까지 이어져 중형이 부여되는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행위 등까지 하게 되는 등 범죄행위 자체에서도 국가이 사법 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조직적인 증언거부, 입맞추기 등의 법원이 실제진실을 밝히려는 사법적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가 보여 지고, 시종일관 국가적 격변을 치렀던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 보다는 시종일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로 인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최순실로부터 강박을 당하였다는 주장, 자신은 미래전략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줌.

4. 재벌그룹이 총수의 사기업처럼 운영되는 현실

총수의 위법한 지시에 대하여 비판과 논쟁의 과정도 없이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지시에 따른 자금 출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위의 재벌그룹에서도 여전히 재벌그룹을 총수 개인의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음.

5. 재벌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 준 이번 사건

재벌총수들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위법한 총수의 지시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의 이사라도 반대의견을 내고 위법한 행위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집행되지 못하도록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법 체계의 개혁이 필요함.

예를 들어, 소수주주의 대표를 이사로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집중투표제, 근로자 대표를 이사회에 보내 회사에 피해를 입히는 위법한 결정에 대해서는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이사제 등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재벌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음.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

발행일 2017. 08. 16.

발행처 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 당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02-723-5052 efrt@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재판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